

200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2002. 3

송 영 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최종보고서

200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2002. 3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 출 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보고서를 『200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02. 3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 송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강만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준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성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요 약 문

I. 과업의 필요성

본 과업은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등을 개선·보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으로 현행 주민지원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한강법 제정취지에도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II. 과업의 추진전략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을 근거로 수행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선을 위해 평가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존 평가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평가기법 및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의 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은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에 대해서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관리측면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대상사업의 선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공개 등 담당공무원들의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또한 주민간의 반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이 다소 지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가 다소 미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IV. 주민지원사업 평가기법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은 기존의 9개 지표의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보완하고 주민지원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표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를 대폭 축소시키고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기법을 도입하여 1차 평가항목을 기존의 9개에서 8개로 조정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시켰으며, 1차평가결과 제출시 총괄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수행결과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표를 개선하여 3개 부문 5개 분야 17개 지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V.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직접지원사업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 확대,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오염물질정화사업 시행의 곤란, 지원사업대상자 인정기준,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마을공동시설 소유권 이전 등이었다.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확대, 지원사업대상자 인정기준,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등은 한강법의 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로,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적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마을공동시설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점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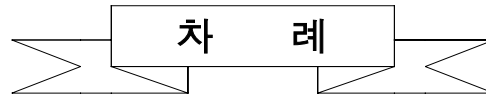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직접지원사업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등의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되어진다. 첫째는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적 이기주의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일선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 또는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팔당수계의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질개선의 현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류지역은 환경 친화적 생산활동을 통해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한강유역공동체 의식을 가꾸어 나가자는 상하류 공영(WIN - WIN) 전략이 주민지원사업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팔당특별대책의 수립취지인 상하류 공영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1.1 과업의 필요성	1
1.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II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5
2.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5
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7
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주민지원사업	10
2.4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3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5
2.6 외국의 주민지원사업 사례	17
2.6.1 일본의 비파호 종합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7
2.6.2 미국의 상수원법과 규약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18
2.6.3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민지원	19
III 사업평가에 대한 고찰	21
3.1 평가의 목적	21
3.2 평가연구의 유형	23
3.2.1 대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23
3.2.2 목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25
IV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27
4.1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평가	28
4.1.1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추진 평가	28
4.1.2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율에 대한 평가	42
4.1.3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평가	44
4.1.4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율에 대한 평가	45
4.2 시·군 자체평가의 9개 지표에 대한 평가	47

4.2.1 총평	47
4.2.2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48
4.2.3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정도	49
4.2.4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51
4.2.5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52
4.2.6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52
4.2.7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53
4.2.8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54
4.2.9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54
4.2.10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정도	55
4.3 총괄평가의 5개지표에 대한 평가	56
4.3.1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 정도	56
4.3.2 공무원 인력체계	57
4.3.3 주민지원사업 관련회의 공무원 참여정도	57
4.3.4 사업계획 및 사업별 예산내역 공개 정도	58
4.3.5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부지침 및 업무편람 정비정도	58

V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보완 및 개선방안

5.1 평가지표의 적정성검토	59
5.1.1 1차자체평가 지표별 평가자료의 접근성 및 신뢰성	61
5.1.2 평가지표의 총괄적 검토	70
5.2 주민지원사업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79
5.2.1 지표별 개선점	79
5.2.2 추가적인 평가지표	85
5.2.3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안)	86
5.3 평가방법의 보완	116
5.3.1 평가범위의 구분	116
5.3.2 평가단의 구성방안	117

VI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주민지원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119
----------------------------	-----

6.2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0
6.2.1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120
6.2.2 직접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127
6.2.3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131
6.2.4 특별대책지역 II 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 확대	133
6.2.5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137
6.2.6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140
6.2.7 오염물질정화사업 시행의 곤란	141
6.2.8 지원사업 대상자 인정기준	142
6.2.9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146
6.2.10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148
6.2.11 마을공동시설 소유권이전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53

표 차 례

표 2.1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	6
표 2.2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	9
표 2.3 폐촉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10
표 2.4 폐촉법에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법	11
표 2.5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12
표 2.6 수도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4
표 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5
표 3.1 평가목적에 따른 평가자의 역할	21
표 4.1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0
표 4.2 용인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1
표 4.3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2
표 4.4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4
표 4.5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5
표 4.6 가평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6
표 4.7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7
표 4.8 이천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8
표 4.9 춘천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39
표 4.10 원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40
표 4.11 충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41
표 4.12 각 지자체별 직접지원사업 비율	42
표 4.13 각 지자체별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 현황	45
표 4.14 각 지자체별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현황	46
표 5.1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61
표 5.2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63
표 5.3 중 · 장기사업계획의 수립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64
표 5.4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65
표 5.5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66
표 5.6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67
표 5.7 단위사업장별 지도 · 점검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68
표 5.8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69
표 5.9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만족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70
표 5.10 주민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안)	87

표 6.1 한강법과 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의 변경세부사항	120
표 6.2 한강법과 삼대강법의 주민지원사업 변경세부사항의 비교	125
표 6.3 I 지역의 관리청별 현금지원가능액 및 가구당 지원가능액	129
표 6.4 II 지역의 관리청별 현금지원가능액 및 가구별 지원가능액	130
표 6.5 III-1 지역의 관리청별 현금지원가능액 및 가구당 지급액	130
표 6.6 한강법과 금강법, 낙동강법 및 영산강법의 사업계획수립절차 비교	132
표 6.7 상수원관리지역의 권역별 행위규제	134
표 6.8 특별대책지역 II 권역의 주민지원사업 이행내역	135
표 6.9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	137
표 6.10 한강법과 삼대강법의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에 대한 비교	138
표 6.11 수도법과 한강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인정기준	144

그 립 차 례

그림 4.1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구분별 비율	28
그림 4.2 남양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30
그림 4.3 남양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대지역 II 권역제외)	30
그림 4.4 용인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32
그림 4.5 용인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대지역 II 권역제외)	32
그림 4.6 하남시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별 비율	33
그림 4.7 여주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34
그림 4.8 여주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대지역 II 권역제외)	34
그림 4.9 광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35
그림 4.10 가평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37
그림 4.11 가평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별대책지역 II 권역제외)	37
그림 4.12 양평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38
그림 4.13 양평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별대책지역 II 권역제외)	38
그림 4.14 춘천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39
그림 4.15 원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40
그림 4.16 충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41
그림 4.17 각 지자체별 직접지원사업 비율(지침에따른 비율 기준)	42
그림 4.18 각 지역별 직접지원사업 비율(지침에따른 비율 기준)	43
그림 4.19 각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을	44
그림 4.20 각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을	47
그림 5.1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항목의 종합적 평가	71
그림 5.2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72
그림 5.3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73
그림 5.4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74
그림 5.5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75
그림 5.6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76
그림 5.7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77
그림 5.8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78
그림 5.9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79
그림 6.1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승인절차	122
그림 6.2 계획사업의 변경에	124

I 서론

1.1 과업의 필요성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인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다. 1975년에는 팔당호 주변지역인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의 4개 시·군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19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을,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에 대한 총체적인 수질보전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수도권지역의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인 수도권행정협의회와 환경부,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수질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 그 결과 동년 11월에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되었으며, 1999년 초에는 국회에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 통과되어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m 이내의 지역을 새로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한강수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강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 연간 700억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본 과업은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등을 개선·보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으로 현행 주민지원사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한강법 제정취지에도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1.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본 과업은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현행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평가지침에 따른 평가절차와 평가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점 및 미비점을 파악·보완하며, 또한 주민지원사업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미비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과업은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

련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업평가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적 검토와 아울러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를 각 관리청에 요청하여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각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담당자와 각 일선 실무자들에 대해 평가지표의 타당성, 접근성 그리고 개선점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의견 등을 설문문을 통해 수집하고자 하였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확보된 평가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진체계부문, 계획의 수립부문, 계획의 시행부문, 사후관리부문 그리고 사업추진성과부문 등 기 설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확보된 자료와 설문문을 통해 얻어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지표에 의해 요구되는 자료의 접근성과 그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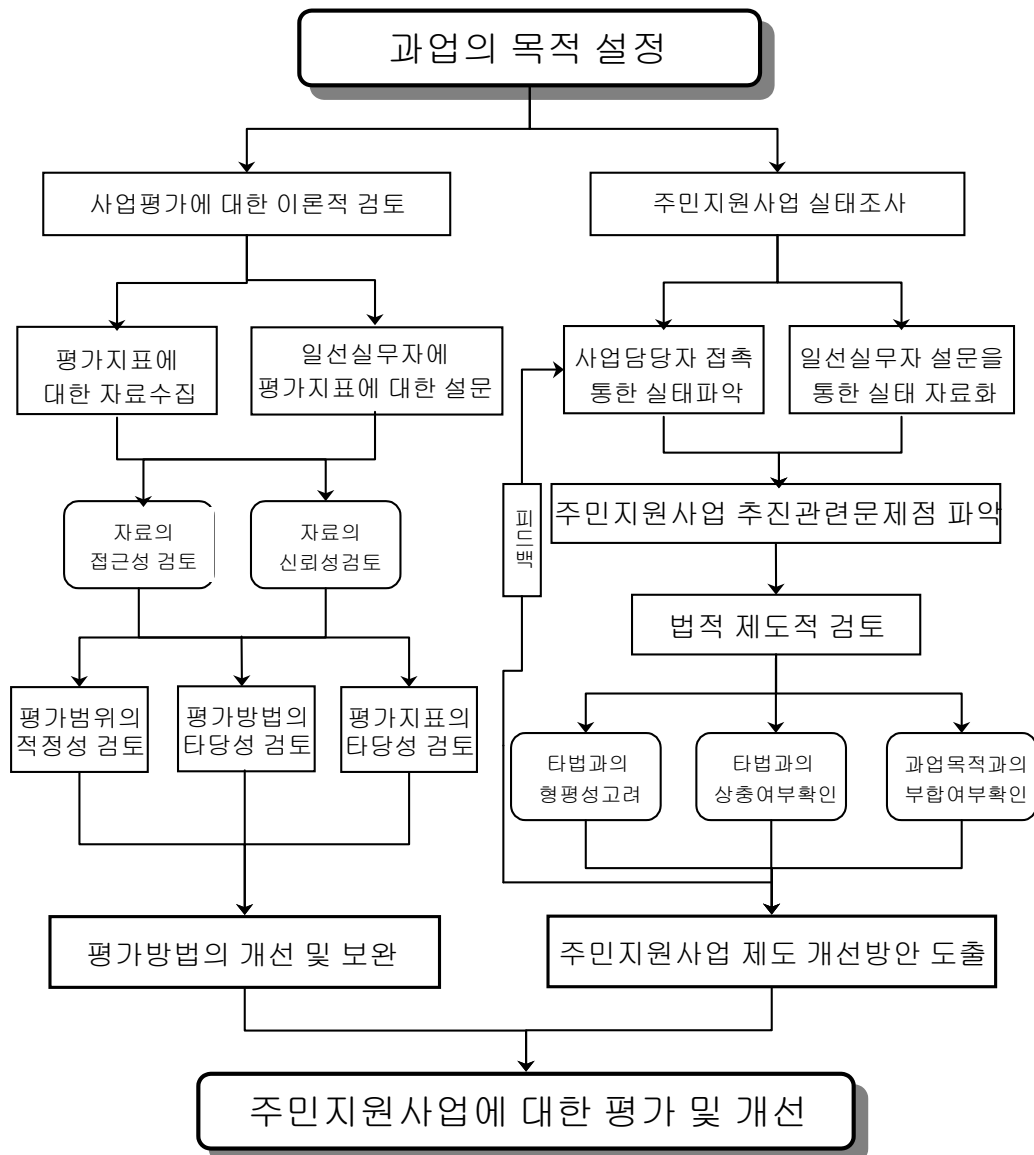
상기의 자료를 토대로 평가절차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리청의 1차 자체평가, 그리고 수계위의 총괄평가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의 2단계 평가의 각 기관별 평가의 중복 여부와 기관별 평가의 범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사례와 외국의 주민지원사업 사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관리청 별 주민지원사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제도 시행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일선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실시하여 주민지원사업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점 등 사업추진실태를 자료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 및 미비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악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2002년 7월 시행예정인 낙동강법 등 3대강법의 주민지원사업제도(안)과 주민들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일차적으로 도출된 개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피드백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본 과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II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2.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동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의 일정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 또는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차입금 그리고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 또는 생활·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적이긴 하지만 한시적인 사업이다.

동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후생사업·육영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2. 1과 같다.

표 2.1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40조제2항관련)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시설, 농기구수리시설, 치어방류, 생산품공동저장시설, 공동가공공장, 농로 및 임도,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재배시설, 생산품공동수송차량 기타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상공업시설	직업훈련소, 공동창고, 마을구관장, 소규모공단 기타 상공업 관련시설
	관광산업시설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판매장 기타 관광산업관련시설
공공시설사업	의료시설	진료소(주민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의료기구, 구급차 기타 의료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장, 마을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방 기타 사회복지관련시설
	도로시설	마을진입도로, 가로등, 버스승강장, 소규모 교량 등 도로관련시설
	상·하수도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그 관련시설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버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과학관, 사회교육시설 기타 교육·문화관련시설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기타 환경·위생관련시설(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기타 운동·오락관련시설
	전기·통신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 공동수신시설 기타 전기·통신관련시설
	도선관련시설	도선(도선운영비를 포함한다) 및 그 선착장시설
후생사업	댐원수사용료지원, 성묘 및 주민이주지원, 고립분묘이장지원 기타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한 후생사업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 학자금 및 장학금지급, 각급학교의 체육문예활동지원, 학교급식시설지원,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기타 육영사업	
부대사업	언론홍보, 주민설명회·간담회 개최, 유인물배포, 댐견학 등 홍보사업, 농기구수리 등 대민지원사업, 지역협력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기타 부대경비	

비고 : 각 사업의 내용에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기타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의 종류별 시행자가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시행자의 전문성과 사업계획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후생사업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육영사업 및 부대사업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를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다.

2.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변지원사업의 재원은 공사의 출연금,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출연금의 규모는 전전년도 공사의 전기판매수입금의 1천분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사가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총 7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으로 표 2.2과 같다.

-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변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전기수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변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한다

- 특별지원사업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홍보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홍보와 대국민홍보로 구분하고 있다.

• 기타 지원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영농·영어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등이 있다.

표 2.2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 (제19조제1항관련)

사업구분	사업내용	사업세부내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 및 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 공동축산, 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 및 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 농로 및 임도,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상공업시설	공업용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 소규모공단등 상공업 관련시설
	관광산업시설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판매장등 관광산업 관련시설
공공시설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등 의료관련시설, 주민건강진단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휴게소, 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등 사회복지 관련시설
	도로시설	소규모도로등 도로 관련시설
	항만시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 소규모어항, 호안옹벽, 방파제등 항만 관련시설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등 상하수도 관련시설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학교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등 교육·문화 관련시설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등 환경·위생 관련시설
	방사능방재시설	방사능감시설비, 주민보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비 및 시설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등 운동·오락 관련시설
	전기·통신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등 전기·통신 관련시설
육영사업		컴퓨터, 피아노등 교육기자재, 학자금 및 장학금지급, 장학기금적립, 각급학교체육활동지원, 각종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학교급식시설지원, 각급학교 우수학생표창,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등 육영사업 관련사업

비 고 :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과 관련한 계획·조사·연구사업 및 시설의 유지·보수·운영을 포함한다.

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은 1995년 수도권 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1년 수도권매립지 제1공구가 건설될 당시에는 동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주민의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매립공사가 수익금의 10%를 출연하여 주민지원사업기금을 조성하고 제정된 동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폐촉법에서는 주민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3 폐촉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구분	폐촉법에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법률	제15조 【시설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5조 【시설부지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일 현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폐촉법에서는 해당지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소유자와 더불어 무허가 건축물소유자는 물론 세입자까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 자격별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4 폐촉법에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법

구분	폐촉법에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법률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폐촉법에서는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구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1999년 개정된 폐촉법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 지원을 허용뿐만 아니라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지원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촉법에서 규정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표 2.5와 같다. 사업의 종류에는 크게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2.5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27조제1항관련)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 원 사 업 세 부 내 용
1. 소득 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저수지·농로·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채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휴양소·토산품판매장 등
2. 복리 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어린이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소규모어항·호안옹벽·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유치원·통학차·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야영장·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기타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장학기금적립·학교급식지원 등	
4. 기타사업	기타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비 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업무가 포함된다.

폐촉법의 주민지원사업은 한강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학자금 및 장학금지급이 한강법에서는 직접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폐촉법에서는 육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폐촉법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은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종료되는 한시적 지원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의 제1공구의 매립이 완료된 시점과 동시에 주민지원사업은 중단되었다. 기존의 지원을 받고 있던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만 매립시설설치기구인 매립공사의 주민홍보 및 계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가고 있다.

2.4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수도법 제6조 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주민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나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이 엄격히 규제받음으로 인해 이에 지역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자금, 차입금, 재원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수도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이며 국가가 수도법 제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기금이 조성된다.

한강수계의 1996년도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63억원이었으며 1997년이 64억원, 1998년이 84억원, 1999년에 80억원원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및 양평군에 지원되었다. 현재 한강법에 의해 4개시군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395억원으로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와 비교한다면 상당부분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도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육영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 2.6과 같다.

표 2.6 수도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11조의3관련)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역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지원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수질보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 영 사 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적립, 학교급식시설지원등 육영관련사업과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 타 사 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

수도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은 한강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과는 달리 직접지원에 대한 규정과 오염물질정화사업부분이 없고, 학자금·장학금 지급이 육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강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동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조달은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원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시행령 제27조 관련)

사 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역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기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업계획의 내용 및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은 2002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다.

2.6 외국의 주민지원사업 사례

2.6.1 일본의 비파호 종합개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비파호는 일본 최대의 호수로 면적이 638km²에 달한다. 비파호 전체 유역주민 1,400만명이 15년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 비파호의 수원은 하류지역의 오오사카, 교토, 고베, 효고현 등의 중요한 상수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비파호 유역의 인구의 증가, 도시화 등으로 인해 물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비파호의 보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정부는 호수의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의 양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비파호 종합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비파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기간은 1971년부터 1991년까지로 비파호 및 그 주변지역의 보존 및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비파호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질소·인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비파호 종합개발계획의 재원은 상류지역 지자체의 상류부담금, 국가보조금 그리고 하류지역 지자체의 하류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비파호 종합개발법에 의해 제도화된 하류부담금은 수자원보존시 피해지역인 상류지역과 수혜지역인 하류지역간의 재정부담에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된 기금은 「비파호 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되며 비파호 관리기금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하수도정비사업 ▪ 분뇨처리시설 정비사업 ▪ 상수도 정비사업 ▪ 농업용 용·배수시설 정비사업 ▪ 조립사업 ▪ 도시공원 또는 자연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정비사업,	▪ 수자원의 보호·배양 및 개발을 위한 사업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정비사업 ▪ 어항정비사업, 축산환경정비사업 ▪ 농업집락 배수처리시설 정비사업 ▪ 쓰레기처리시설 정비사업 ▪ 호안 및 호저의 청소사업 ▪ 유지관리비
--	--

2.6.2 미국의 상수원법과 규약(Watershed Rules & Regulations)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미국은 각 주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상수원을 관리함으로써 그 관리와 운영에 차이가 있다. 9개주만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규약을 두고 있으며 그 규정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수원에서의 위락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지점으로부터 300m이내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내수면

으로부터 100m 이내 상수원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상수원법은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행위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토지매수를 통해 이를 대신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취수원으로부터 300m 이내에 특정시설의 입지를 금지하고 1.6km이내의 지역에는 오염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없으며 1997년 체결된 상수원협정(Watershed Agreement)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뉴욕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보존하고 유역내의 지역경제 및 사회·문화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CWC(Catskill Watershed Corporation)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CWC는 뉴욕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의 경제발전 및 보전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동기금을 집행·관리하고 있다. 재원은 시와 주정부의 보조로 충당되며 CWC 프로그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8가지사업으로 구분되며 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Catskill 미래기금(Catskill Fund for the Future : CFF)

Catskill 미래기금은 총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사업자금 용자와 소액용자를 비롯하여 정화조설치보조, 고용창출, 지역발전과 문화계승에 대한 보조, 환경청정산업에 대한 보조 등 산업발전과 경제발전 및 생활환경개선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 경제발전연구(Economic Development Study)

Catskill미래기금의 사용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Catskill미래기금의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신규 건축물에 대한 강우관리(Stormwater Controls for New Construction)

신규 건축물 중 불투수층이 일정기준 이상인 대상물에 대하여 유출되는 강우의 처리계획에 대해 건설 및 유지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 강우관리시설 개선(Stormwater Retrofit Program)

기존의 강우처리시설 등에 대한 개선비용과 보수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 정화조 보수 및 교체(Septic System Rehabilitation and Replacement)

개별정화조의 처리능력이 저하되었거나 파손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처리가 불가능한 정화조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개량형 정화조 비용 보조(Alternate Design Septic Program)

상수원구역의 강화된 규정에 의해 기존의 정화조보다 개량된 정화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환경 친화적인 제설제 보급(Sand and Salt Storage Program)

보다 환경 친화적인 제설제를 보급함으로써 상수원구역의 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소금과 모래의 저장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 환경육영사업(Public Education)

상수원보호구역의 자연의 중요성에 관한 공공교육을 지원하고 유역의 역사, 생태, 수생생물의 다양성과 중요성, 지역박물관 지원 등 수질보전에 대한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6.3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주민지원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질소로 인한 상수원의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질소오염자인 라인강 상류지역의 농민들의 질소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질정책의 방향을 잡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장관회의에서는 수질보전지역 내 농업종사자의 토지이용 제한에 대한 재정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및 환경 그리고 임업 장관으로 구성으로 되는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결과 1987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법 제24조 제4항에 의해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질보전지역내의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보전을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의 최종사용자가 톤당 50원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냉각용수, 난방용수, 일부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할인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이 농민들의 생업인 농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으로부터 직접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III 사업평가에 대한 고찰

3.1 평가의 목적

공공사업이 공공이익의 실현과 공공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간여하는 중요한 행동의 지침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그 사업이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사업의 당위성, 사업집행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사업의 영향과 효과,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정책대안 등이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사업평가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평가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평가는 사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들을 응용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의 사업추진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평가는 대개가 서로 연관된 수 개의 목적과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상이한 평가기능은 상이한 평가자의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평가 동기와 그에 따른 평가자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표 3.1 평가목적에 따른 평가자의 역할

평가목적	평가자의 역할
▪ 통제(control)	▪ 통제자 또는 감시자
▪ 인과관계의 검증(validation)	▪ 연구조사자
▪ 구조혁신(organization innovation) - 문제해결(problem-solving) - 자기반성(self-reflection)	▪ 자문자 - 문제해결자 - 전문가 - 제도자

평가의 목적이 통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역할로서 계획된 사업이 의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과관계의 검증이 평가의 주목적일 경우에는, 규정된 사업의 시행수단이나 활동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효과와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평가자의 역할이다.

구조혁신이 평가의 목적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조직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평가자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3.2 평가연구의 유형

3.2.1 대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1) 정책평가

정책평가는 바람직한 사회를 구축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특정국가 혹은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을 형성한다.

정책은 사업, 시책 및 활동의 상위개념이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이들을 포괄하면서 정부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후속조치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평가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과정상의 책임성을 확보하며, 이론을 구축함으로써 학문발달에 기여한다.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결과와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한다. 정책평가는 정부가 과연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집행과정에서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에 비해 행정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킨다.

둘째, 정부의 대응성을 높인다. 정책평가는 국민의 행정수요에 대하여 정부가 적시에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정부가 물적 인적 자원을 행정요구에 대응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입이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정책결정·집행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과정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정책평가는 특정정책의 계속적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사업평가

사업평가는 정책의 집행을 위해 구체화된 정책수단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하위 수준의 정책평가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정책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인 경우가 많다. 사업을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더라도, 정책평가란 집행기관별로 정책이 구체화되어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평가와 사업평가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업이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면 목표와 수단의 관계에서 이

들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평가는 정책평가의 하위체계로 볼 수 있다.

(3) 성과평가

성과평가는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의 계층구조상 최하위 계층으로 인식될 수 있다. 사업평가가 없었다면 여러 다양한 시책을 만드는 활동으로서의 정책분석은 거의 의미가 없다. 또한 정부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을 모니터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호 혹은 외부요인들과 연결시키는 성과평가는 사업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과 결과에 관심을 갖는 정부는 성과평가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업무성취도를 높여야하는 상황에서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성과평가가 정부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정부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계량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정부의 관심이 크게 강화된 성과평가는 장·단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추진실적향상을 기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에게 평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사업의 결정·집행과정에 투입되는 예산과 자원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결과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성과평가인 것이다.

3.2.2 목적적 관점에서의 평가유형

(1)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실시 중인 혹은 완전히 종료된 특정정책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정책이 전반적으로 성공과 실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계량분석적 접근법이다. 따라서 총괄평가의 특징으로는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이 실시되고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나 또는 실시가 완료된 후에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이나 사업이 초래한 제반영향을 분석하며, 철저하게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특정사업이나 정책의 목표치와 실제 달성치를 주로 비교하는 총괄평가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평가의 결과를 인식한 후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과정분석(process analysis)로 이해되기도 하고, 관찰된 정책 또는 사업효과의 인과적 연쇄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질적 분석으로 정의된다. 과정평가는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활동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계

획, 절차, 투입, 활동 등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 혹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로를 밝혀서 총괄 평가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책이나 사업이 집행되는 가운데 그 활동들을 기술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집행절차와 계획을 포함한 집행활동들의 변화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식별하는 것이 과정평가의 주요과업이다. 따라서 과정평가는 정책이나 사업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 정책이나 사업의 강점 및 약점, 주민의 참여방법과 정도, 사업관리자와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과정평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자나 사업관리자 및 그 밖의 정책관계자들이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상황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계획된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장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개선점들을 식별하게 한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들의 사업운영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특정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된 결과 그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들을 보급하여 반복 실시하는 데 유리하다.

IV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의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등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명확하게 규정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추진사업과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과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에 대해 추진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도출된 평가결과가 정책의 방향설정과 제도개선의 방안을 제공하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평가지침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수립부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 그리고 사업성과부문의 3개 부문 총 9개 지표에 대해 관리청의 1차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업계획수립부문은 마을 주민회의, 읍·면 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여부와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에 실제 기여 가능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부문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업추진내용의 일치 여부, 사업비 집행방법의 적정성 등 사업시행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설물 등의 활용 여부, 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여부 등 관리내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업성과부문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각 관리청에서 자체 실시한 1차평가결과를 취합·정리 및 검토하여 수계위에서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총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에서는 평가지침에 규정된 9개 지표와 평가기관이 기 작성한 추가지표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총괄적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초기시행단계인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과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향후 주민지원사업이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평가절차 또는 평가방법이 정착된 후에는 평가지표별 세부기준에 따라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1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평가

4.1.1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추진 평가

200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이행계획서(2000년 7월 기준)를 바탕으로 사업구분별로 살펴본 바, 총 사업비중 45.9%가 복지증진사업

으로 추진되었다. 오염물질 정화사업이 24%, 소득증대사업이 17.5%, 직접지원사업이 11.9%, 육영사업이 0.7%로 집계되었다. 그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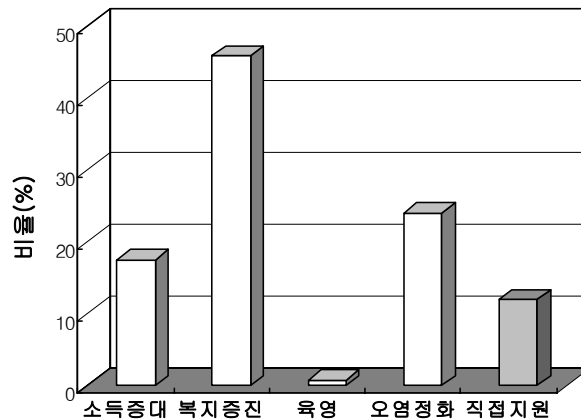


그림 4.1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구분별 비율

그림 4.1과 같이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육영사업의 추진이 타 사업에 비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증진사업이 전체 사업 중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추진이 많았다.

육영사업의 추진이 미미한 것은 학자금지원의 대상이 한정되어있고 또 학교시설지원비의 규모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육영사업에 대한 사업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증진사업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가 표면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이 복지증진사업과 비교하여 미진하였다. 소득증대사업은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므로 주민지원사업이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 부족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추진이 총 사업비 중 24%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대책지역 II권역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특별대책지역 II권역의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제외하면 거의 추진된 바가 없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추진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량관리 등과 상충되는 바가 없지 않아 실제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현재의 시점에서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총 사업비의 24%를 차지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16.7%, 복지증진사업이 35.1%, 육영사업이 1.3%, 오염물질정화사업이 17.8%이었으며 직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중 29.1%로 나타났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지침에 따른 비율인 50%중 48%를 차지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4.2는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이 약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오염물질정화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각각 23.6%, 25.1%로 유사하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은 오염물질정화사업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집행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을 제외한 사업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3은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을 제외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은 66.1%로 일반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증대사업이 31.5%이고 육영사업이 2.4%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4.1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940,332	628,658	0	0	1,568,988 (50.0%)	3,137,978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61,158	292,000	0	0	212,324 (37.5%)	565,482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22,085	1,225,486	79,000	0	-	1,326,571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	-	1,085,828	-	1,085,828
합계	1,023,575 (16.7%)	2,146,144 (35.1%)	79,000 (1.3%)	1,085,828 (17.8%)	1,781,312 (29.1%)	6,115,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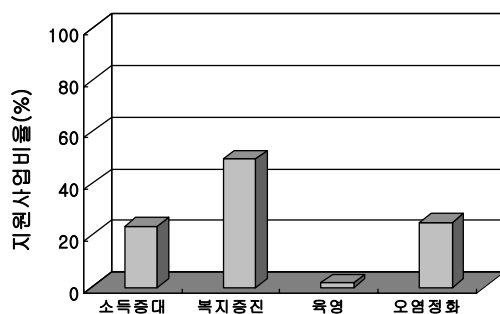


그림 4.2 남양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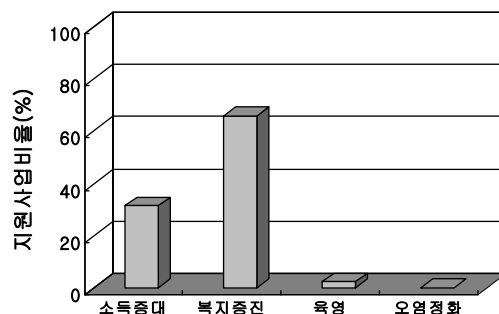


그림 4.3 남양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대지역Ⅱ권역제외)

(2) 용인시

용인시는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17.4%, 복지증진사업이 43.6%, 육영사업이 0.0%, 오염물질정화사업이 37.3%이었으며 직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중 1.7%로 나타났다. 직접지원사업비의 지침에 따른 비율인 50%를 기준으로 단지 3.6%만을 차지함으로써 남양주시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과 오염물질정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4.2 용인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605,156	1,472,679	0	0	78,000 (3.6%)	2,155,835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권역	193,779	528,426	0	0	-	722,205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1,712,750	-	1,712,750
합계	798,935 (17.4%)	2,001,105(43.6%)	0 (0.0%)	1,712,750(37.3%)	78,000 (1.7%)	4,590,790

그림 4.4는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이 4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오염물질정화사업이 37.3%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4.5는 특별대책지역 II권역을 제외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은 71.5%로 일반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증대사업이 21.5%이고 육영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용인시는 상수원관리지역에 새로이 지정되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이 초기임을 고려하면 대부분 각 마을의 숙원사업 선정으로 복지증진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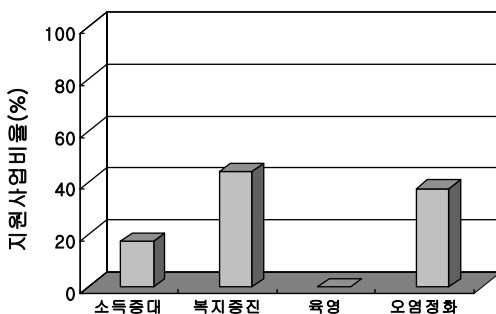


그림 4.4 용인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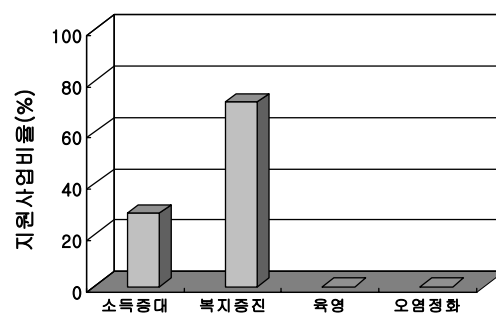


그림 4.5 용인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대지역 II 권역 제외)

(3) 하남시

하남시는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0.0%, 복지증진사업이 60.1%, 육영사업이 0.0%, 오염물질정화사업이 34.1%이었으며 직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중 5.8%(지침에 따른 비율도 동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한 지원을 받아왔던 곳으로 대부분의 지역과는 달리 직접지원사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오염물질정화사업이 34.1%나 차지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 4.3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0	184,062	0	104,387	17,613 (5.8%)	306,062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권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	-	-
합계	0 (0.0%)	184,062 (60.1%)	0 (0.0%)	104,387 (34.1%)	17,613 (5.8%)	306,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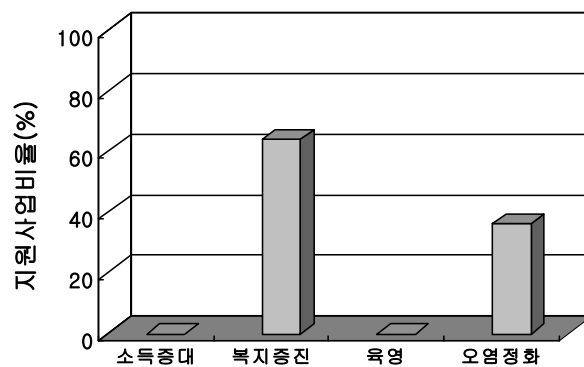


그림 4.6 하남시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별 비율

(4) 여주군

여주군은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29.1%, 복지증진사업이 55.2%, 육영사업이 0.0%, 오염물질정화사업이 8.8%이었으며 직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중 6.9%로 나타났다. 직접지원사업비의 지침에 따른 비율인 50%를 기준으로 16%를 집행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4.7은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이 59.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소득증대사업이 31.3%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4.8은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을 제외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은 65.5%로 일반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증대사업이 34.5%이고 육영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표 4.4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579,302	1,336,041	0	0	458,144 (19.3%)	2,373,487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159,179	332,252	0	0	0 (0.0%)	491,431
특별대책지역 I권역	1,186,131	1,985,558	0	0	-	3,171,689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579,454	-	579,454
합계	1,924,612 (29.1%)	3,653,851 (55.2%)	0 (0.0%)	579,454 (8.8%)	458,144 (6.9%)	6,61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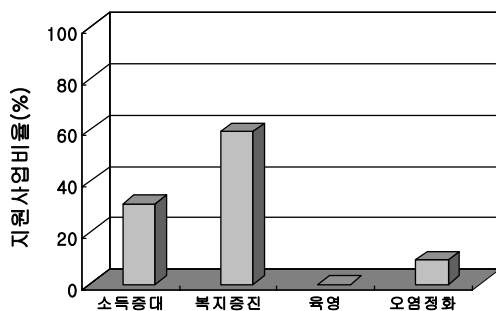


그림 4.7 여주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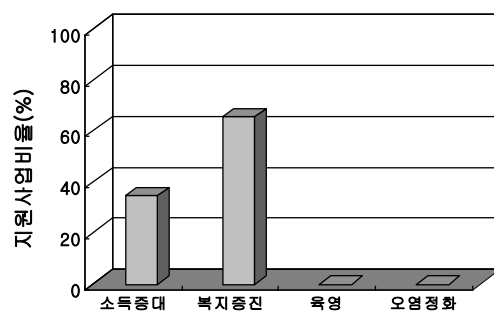


그림 4.8 여주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대지역Ⅱ권역제외)

(5) 광주시

광주시는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17.9%, 복지증진사업이 58.8%, 육영사업이 2.2%, 오염물질정화사업이 0.0%이었으며 직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중 21.0%로 나타났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지침에 따른 비율인 50%를 기준으로 40.6%를 차지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4.9는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이 7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소득증대사업도 22.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직접지원사업비율을 45.4%를 차지한 반면에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변구역의 경우에는 1.2%를 차지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은 직접지원사업비의 시행비율을 높여줄 것을 적극 요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1,051,786	2,144,757	34,131	0	2,690,156 (45.4%)	5,920,830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48,757	574,159	98,360	0	8,657 (1.2%)	729,933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권역	1,196,159	4,825,464	150,000	0	-	6,171,623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	-	-
합계	2,296,702 (17.9%)	7,544,380 (58.8%)	282,491 (2.2%)	0 (0.0%)	2,698,813 (21.0%)	12,822,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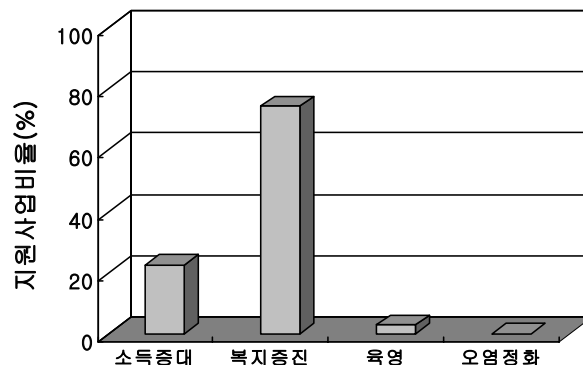


그림 4.9 광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6) 가평군

가평군은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6.2%, 복지증진사업이 63.6%, 육영사업이 0.0%, 오염물질정화사업이 30.2%이었으며 직접지원사업은 시행하지 않았다.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4.10은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이 약 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오염물질정화사업도 약 30%를 차지하였다. 그림 4.11은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을 제외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은 91.9%로 일반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증대사업이 8.9%이고 육영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표 4.6 가평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0	932,421	0	0	0 (0.0%)	932,421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0	216,142	0	0	0 (0.0%)	216,142
특별대책지역 I권역	199,469	895,137	0	0	-	1,094,606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970,328	-	970,328
합계	199,469 (6.2%)	2,043,700 (63.6%)	0 (0.0%)	970,328 (30.2%)	0 (0.0%)	3,213,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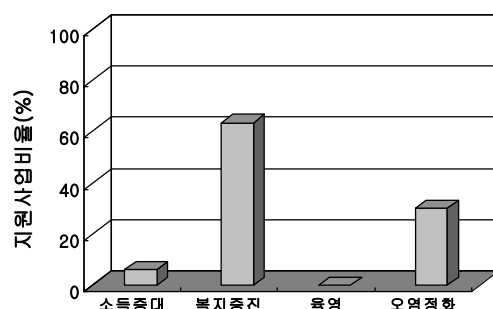


그림 4.10 가평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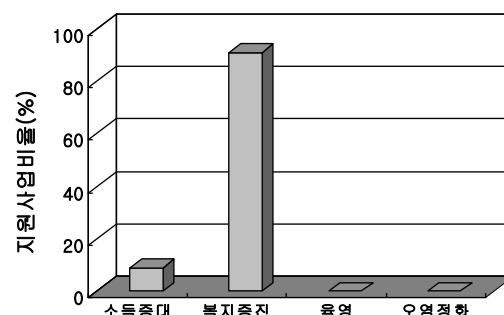


그림 4.11 가평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별대책지역Ⅱ 권역제외)

(7) 양평군

양평군은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19.3%, 복지증진사업이 49.0%, 육영사업이 0.0%, 오염물질정화사업이 23.3%이었으며 직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8.5%를 차지하였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지침에 따른 비율인 50%를 기준으로 23.0%를 차지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사업이 53.5%, 소득증대사업이 21%, 오염물질정화사업이 25.5%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4.7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130,806	1,518,670	0	50,000	283,550 (14.3%)	1,983,026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506,451	1,523,071	0	47,000	843,750 (28.9%)	2,920,272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권역	1,921,010	3,460,759	0	0	-	5,381,769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2,997,346	-	2,997,346
합계	2,558,267 (19.3%)	6,502,500 (49.0%)	0 (0.0%)	3,094,346 (23.3%)	1,127,300 (8.5%)	13,282,413

그림 4.12는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이 약 5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림 4.13은 특별대책지역 II 권역을 제외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일반지원사업 중 사업구분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증진사업은 71%로 일반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증대사업이 27.9%이고 육영사업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오염물질정화사업이 1.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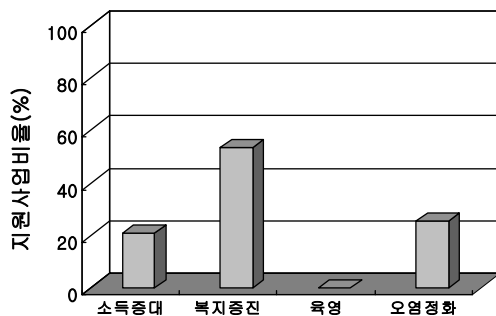


그림 4.12 양평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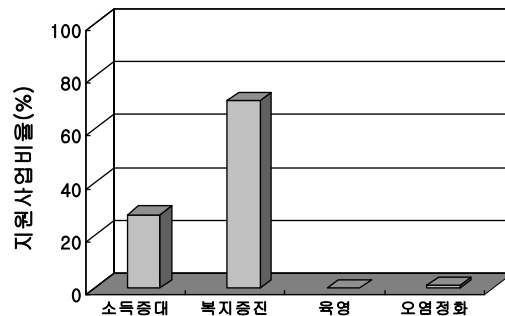


그림 4.13 양평군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특별대책지역 II 권역제외)

(8) 이천시

이천시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으로 총 사업비가 모두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계획되었다.

표 4.8 이천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권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5,081,474	-	5,081,474
합계	0	0	0	5,081,474 (100%)	-	5,081,474

(9) 춘천시

춘천시는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만 해당되며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6.4%, 복지증진사업이 68.6%, 육영사업이 0.0%, 오염물질정화사업이 11.3%이었으며 직접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3.7%(지침에 따른 비율도 동일)를 차지하였다.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사업이 79.4%로 대부분이었다.

표 4.9 춘천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28,300	302,700	0	50,000	60,343 (13.7%)	441,343
특별대책지역 I권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	-	-
합계	28,300 (6.4%)	302,700 (68.6%)	0 (0.0%)	50,000 (11.3%)	60,343 (13.7%)	441,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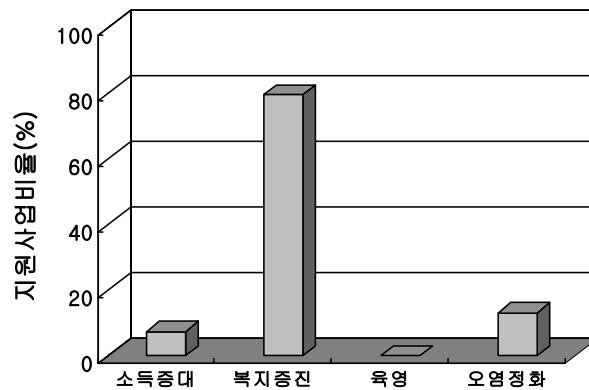


그림 4.14 춘천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10) 원주시

원주시는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50.6%, 직접지원사업이 49.4%를 차지하였다. 일반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 100%를 차지하였다. 직접지원사업 비율은 지침에 따른 비율인 50%에 근접하였다.

표 4.10 원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120,000	0	0	0	116,964 (49.4%)	236,964
특별대책지역 I권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	-	-
합계	120,000 (50.6%)	0 (0.0%)	0 (0.0%)	0 (0.0%)	116,964 (49.4%)	236,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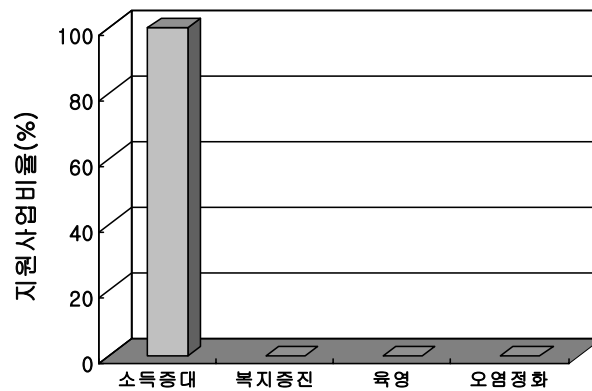


그림 4.15 원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11) 충주시

충주시는 총 사업비 중 소득증대사업이 53.5%, 복지증진사업이 36.4%, 직접지원사업이 10.1%를 차지하였다. 그림 4.16에서와 같이 일반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이 59.5%, 복지증진사업이 40.5%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4.11 충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계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상수원보호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안의 수변구역	-	-	-	-	-	-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	445,929	302,905	0	0	84,000 (10.1%)	832,834
특별대책지역 I권역	-	-	-	-	-	-
특별대책지역 II권역	-	-	-	-	-	-
합계	445,929 (53.5%)	302,905 (36.4%)	0 (0.0%)	0 (0.0%)	84,000 (10.1%)	832,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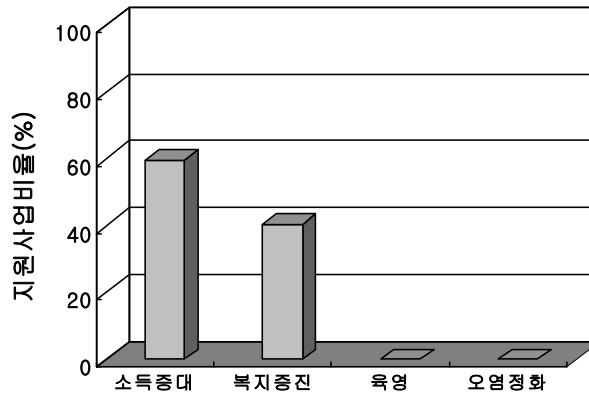


그림 4.16 충주시 일반지원사업중 사업별 비율

4.1.2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율에 대한 평가

상수원관리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내의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의 50%범위 이내로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직접지원사업 비율은 표 4.12와 그림 4.17과 같다.

표 4.12 각 지자체별 직접지원사업 비율

(지침에 따른 비율 기준)

구분		직접지원비율(%)
경기도	남양주	48.1
	용인시	3.6
	하남시	5.8
	여주군	16.0
	광주시	40.6
	가평군	0.0
	양평군	23.0
강원도	춘천시	13.7
	원주시	49.4
충북도	충주시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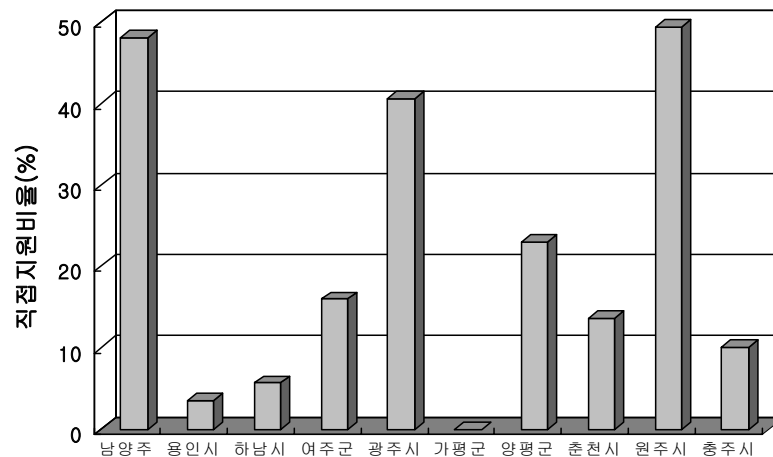


그림 4.17 각 지자체별 직접지원사업 비율(지침에따른 비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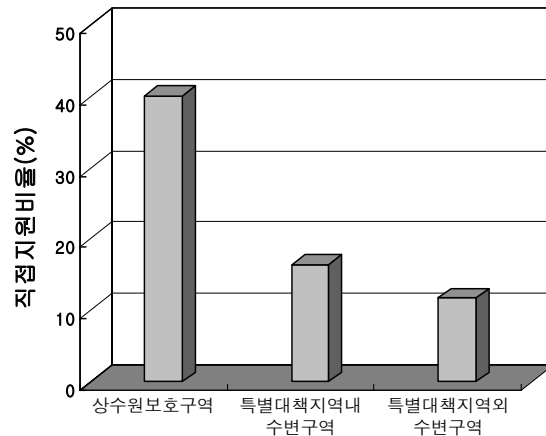


그림 4.18 각 지역별 직접지원사업 비율(지침에 따른 비율 기준)

직접지원사업비는 50%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시, 광주시, 원주시 등은 지침에서 규정한 비율인 50%에 육박하였으며 용인시, 하남시, 가평군은 매우 낮은 직접지원사업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상자에게 직접혜택이 가능한 사업선정이 가능함에도 대상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선결하고자 하는 숙원사업 집행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18은 상수원관리지역별로 집행된 직접지원사업 비율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지원사업비 중 40.2%를 직접지원사업비가 차지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수변구역은 16.5%, 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은 11.8%를 차지하였다.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침에서 정한 직접지원 비율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평가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율은 그림 4.19와 표 4.13과 같다. 남양주시와 이천시 그리고 용인시는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정화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또 대부분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변경건수에 비해 변경율이 높게 나타났다. 원주시는 변경율이 100%였으나 총 사업건수가 1개이었으므로 1개사업의 변경으로 전체사업비가 변경된 것이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전체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그 중 65.4%가 수계위 승인이 요구되는 사업변경이었다. 하남시는 주민지원사업 중 30.7%의 수계위 승인이 요구되는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용인시가 19%, 광주시가 18.8%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주민지원사업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수

립이 철저하지 못하고 관리청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미온적인 대처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업계획변경요구가 발생하거나 사업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발생된다.

사업계획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업계획변경과 수계위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업계획변경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율과 변경의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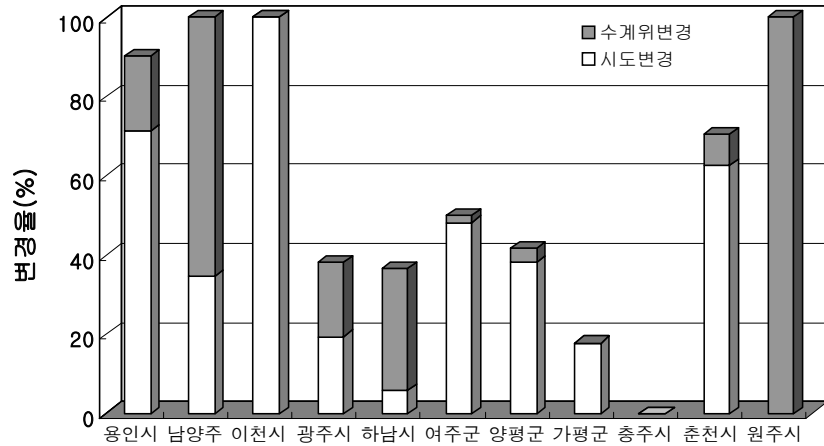


그림 4.19 각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율

표 4.13 각 지자체별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 현황

구분	변경 사업 금액					
	금액(천원)	변경비율 (%)	시도승인		수 계 위 심 의 · 확 정	
			금액(천원)	변경비율 (%)	금액(천원)	변경비율 (%)
합 계	30,489,875	56.7	22,024,014	41.0	8,465,861	15.7
용인시	4,140,139	90.2	3,266,736	71.2	873,403	19.0
남양주	6,262,000	100.0	2,263,496	34.6	3,998,504	65.4
이천시	5,098,273	100.0	5,098,273	100.0	-	0.0
광주시	4,912,452	38.3	2,499,618	19.5	2,412,771	18.8
하남시	111,619	36.5	17,675	5.8	93,944	30.7
여주군	3,307,918	50.0	3,193,393	48.3	114,525	1.7
양평군	5,534,642	41.7	5,075,042	38.2	459,600	3.5
가평군	574,718	17.9	574,718	17.9	-	0.0
충주시	0	0.0	0	0.0	0	0.0
춘천시	311,150	70.5	35,000	7.9	276,150	62.6
원주시	236,964	100	0	0.0	236,964	100.0

자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료(2002년 2월 2일 기준)

4.1.4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집행율에 대한 평가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사업확정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 실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2001년 12월 현재 집행율은 경기도의 경우 76.9%로 집계되었다. 집행율이 가장 미진한 지자체는 이천시로 10.7%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으로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을 집행하기 때문에 정화시설의 공법선정과 부지매입 등 타 사업에 비해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각 지자체별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율
합 계	53,767,902	41,377,933	76.9%
용인시	4,590,826	2,941,763	64.1%
남양주	6,115,859	5,048,769	82.6%
이천시	5,081,474	544,941	10.7%
광주시	12,822,569	10,166,671	79.3%
하남시	306,062	282,118	92.2%
여주군	6,616,061	6,437,102	97.3%
양평군	13,510,413	11,532,538	85.4%
가평군	3,213,497	1,989,149	61.9%
충주시	832,834	832,834	100.0%
춘천시	441,343	147,643	33.4%
원주시	236,964	236,964	100.0%

자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료(2001년 12월 31일 기준)

이천시를 제외하고는 그림 4.20과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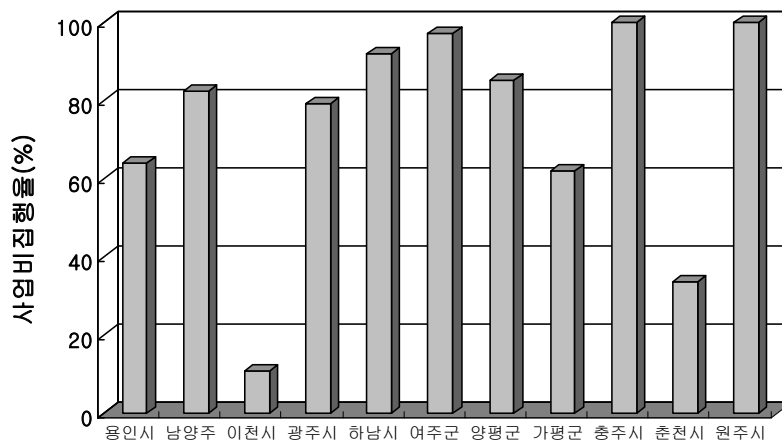


그림 4.20 각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율

4.2 시·군 자체평가의 9개 지표에 대한 평가

4.2.1 총평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의 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관리청이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은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에 대해서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사업계획의 변경비율은 다소 높았지만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적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수행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관리측면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목적물이 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부분이 전용의 소지가 없는 사업으로 수립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선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공개 등 담당공무원들의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또한 주민간의 반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이 다소 지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권한이 지나치게 지역주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가 다소 미진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의 인력체계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4.2.2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주민의견수렴정도는 사업계획수립시 마을 주민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단위사업별 마을 주민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본 지표는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규정하여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잘된 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적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이다. 또한 주민이 발의하여 사업을 제시

하고 주민이 사업선정에 참여함으로써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수립취지를 이해하고 한강유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추진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는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관리청이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투명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미흡한 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팔당수계수질개선에 지역주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에는 틀림없지만 주민의 동의서를 필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마을 단위별 주민회의를 통해 대상사업이 선정되어 장기적이고 대규모사업의 계획수립이 다소 지난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대규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을간 또는 지역간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할 경우 신속한 합의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의 발의를 통한 사업의 선정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일부사업으로 편중된 사례도 파악된 바 있다. 일부 관리청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거의 복지증진사업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민 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와 관리청 간의 긴밀한 협조가 부족한 예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개선할 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한강법의 제정이념과도 연관되어 있다. 사업의 추진이 사업집행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주민과 관리청 간의 상호보완적이고 상호 견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2.3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정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체 읍·면수 중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된 읍·면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읍·면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구성일시, 위원명단,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1) 잘된 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장 외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시켜 주민의 대표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기구이며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가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리청에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심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의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주시, 춘천시, 원주시 등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미흡한 점

직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해당지역에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필수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지원사업의 특성상 추진위원회와 관리청 간의 협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3) 개선할 점

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 필요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다소 비합리적인 면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활동영역을 규정하고 구성을 필수요건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간의 협이나 대규모사업을 수립할 시에 주민대표성을 견지한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역간의 협의를 도출하는 등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선정의 역할이 아닌 관리청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대표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2.4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는 전체 단위사업수 중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되는 단위사업수 비율로 평가하였다. 또한 중·장기 계획수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총투자액, 연차별투자계획, 계획기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1) 잘된 점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고 있어 단기적인 사업의 선정이 불가피하였으나 대부분의 관리청이 단기사업일지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이미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의 중·장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충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중·장기사업계획서를 기 작성한 상태이며 작성된 중·장기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주

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양평군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대규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2) 미흡한 점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상당 부분 단기적인 사업으로 수립되고 시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사업이 반드시 적절치 못한 것은 아니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각 마을별 숙원사업에 대해 선결하고자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생활수준 향상과 아울러 수질 개선효과도 도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3) 개선할 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과 아울러 중·장기 사업계획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리청이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장기사업계획으로 추진되는 단위사업수 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액과 계획기간 등도 동시에 계량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5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는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내용(성과물)의 일치 여부 정도, 당해연도 내 추진완료 여부 정도 비율로 평가하였다. 또한 당초계획대비추진실적과 단위사업실적서 등도 검토하였다.

(1) 잘된 점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는 대부분의 관리청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해연도 내 추진완료여부도 높게 평가되었다. 4.1.3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주민지원사업계획의 변경비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변경의 대부분이 사업비의 변경이었으며 실제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고 또한 마을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 미흡한 점

당해연도 내 추진완료 여부는 사업비 배분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의 적기에 사업을 추진치 못한 면도 있으며, 또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인해 적기에 사업을 추진치 못한 사례가 있었다.

(3) 개선할 점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을 절차상 일정애 맞도록 시행하여 사업시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과의 협의를 도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선정 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2.6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는 시설설치사업 또는 구매사업중 시·군 또는 읍·면에서 직접집행 또는 직접구입한 비율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군 또는 읍·면에서 직접집행 또는 구입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였다.

(1) 잘된 점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는 관리청이 예산을 직접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관리청에서 직접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주시, 춘천시 등은 사업전반에 걸쳐 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미흡한 점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해당주민 전체에 대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기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지원대상지역의 경우 직접지원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본 지표에 대해 낮게 평가되는 관리청이 있었다.

(3) 개선할 점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관리청이 직접집행하는 것보다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집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바, 평가를 실시할 경우 직접지원사업은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7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는 단위사업별로 관리카드 비치·기록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비율로 평가하였다. 또한 관리카드 비치·기록 및 관리책임자 지정·관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관리카드의 비치일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1) 잘된 점

단위사업의 관리는 많은 사업추진현장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단위사업관리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의 협력을 얻어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였다. 또한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미흡한 점

단위사업수가 많은 관리청의 경우에 관리자책임자의 지정과 관리카드 비치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관리카드 비치·기록에 있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책임자 외의 점검내역이 제외되어 있다. 점검내역은 현장방문실적과 상호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2.8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는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목적으로 단위사업장에 현장방문한 실적을 비율로 평가하였다. 또한 단위사업장별 방문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출장일지 및 장소, 출장수행내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비교적 적은 관리청의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비교적 많고 단위사업수가 많은 관리청의 경우에는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인력충원 없이 기존의 타 업무자가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지도·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4.2.9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는 사업의 목적물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의도되었던 용도로의 이용정도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또한 본래용도로 사용됨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당초 사업계획목적물 대비 사업완료 후 사용현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1) 잘된 점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목적물이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의도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지원사업이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농로포

장, 마을회관 등 전용될 소지가 적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동일한 용도로 이용도가 높게 평가되는데 고려되었다.

(2) 미흡한 점

동일한 용도로 목적물이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현장방문이 수반되어야하나 실제 현장방문없이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지도·점검 등과 병행하여 현지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선할 점

동일한 용도로 목적물이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하여 실제 확인절차를 거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용도로 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4.2.10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정도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는 주민지원사업추진과정, 공무원들의 협조정도,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공개정도,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체감정도 등을 설문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1) 잘된 점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설문에서 공무원의 협조와 주민회의 참여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 주민지원사업의 예산내역 및 공개내역도 설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2) 미흡한 점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설문대상자를 무작위가 아닌 리별·동별 이장 및 동장을 포함한 2인으로 하고 있어 설문의 신뢰도가 다소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4.3 총괄평가의 5개 지표에 대한 평가

4.3.1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 정도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내역을 바탕으로 홍보자료와 홍보실적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1) 잘된 점

각 관리청별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충주시와 광주시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타 시·군에도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흡한 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의 주목적은 물이용기금의 운영취지와 주민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상하류 공영정신인 WIN-WIN전략을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질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주민제도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대민홍보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보자료의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선할 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프로그램화하여 민방위교육이나 공적인 공청회시에 적극적으로 홍보 및 주민제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3.2 공무원 인력체계

공무원 인력체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관련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자의 수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관리청이 시·군단위 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비전담자가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적은 관리청의 경우에는 현재의 인력체계에서도 업무의 가중정도가 높지 않지만 배분액이 많은 특히 경기도의 관리청의 경우에는 일선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중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공무원 인력체계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인자일 것이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체계에 대해 재점검해 볼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4.3.3 주민지원사업 관련회의 공무원 참여정도

주민지원사업 관련회의 공무원 참여정도는 개최된 주민지원사업 관련회의에 공무원이 참여한 근거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1) 잘된 점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당해년도 사업선정 시에 담당공무원이 배석하여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선정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함으로써 주민과 관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미흡한 점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됨으로 인해 주민지원사업의 비담당자가 배석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방향성 제시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3.4 사업계획 및 사업별 예산내역 공개 정도

사업계획 및 사업별 예산내역 공개정도는 공개방법과 공개횟수 등을 검토하여 평가였다.

(1) 잘된 점

예산내역의 공개방법은 주민회의 등에서 내용을 언급하는 방안과 지정장소에 내역을 비치하고 열람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서면 자료화하여 배부하는 방안 등으로 크게 나누어 졌다. 가평군과 광주시의 일부에서는 예산내역을 서면 자료화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배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미흡한 점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예산내역을 요약하여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의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3.5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부지침 및 업무편람 정비정도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부지침 및 업무편람 정비정도는 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질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체 규정 등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로 평가하였다.

(1) 잘된 점

충주시의 경우에는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운영방법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평군은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보완지침을 작성하여 수행하였다.

(2) 미흡한 점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은 관리청의 의지에 따라 그 효율성이 좌우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수질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주민지원사업 평가의 보완 및 개선방안

5.1 평가지표의 적정성검토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침에서 규정한 3개 부문 5개 영역 9개 지표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평가지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지표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평가지표는 평가의 목적을 수반하고 평가결과의 활용성이 보장되어야할 뿐 만 아니라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만 평가의 의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 지표는 현실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계량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측정과정과 측정결과의 해석에서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타당성(validity) : 타당성은 측정하려는 사업의 성과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측정해 내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지표는 의도한 사업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평가질문서 작성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주관에 따른 편견에 의해 가급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체화된 측정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reliability) : 신뢰성 기준은 평가의 신빙성과 안정성의 측면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측정도구가 어떤 현상을 반복해서 측정하였을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포괄성(comprehensibility) : 지표들이 성과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기관의 주요업무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선정된 지표가 높은 성과를 산출한 업무분야에만 집중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한 평가는 단편적인 평가이므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비용(being sensitive to data collection cost) : 지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측정비용이 평가의 효용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 좋은 성과지표는 측정이 용이하고 정확하면서도 측정비용이 적게 드는 지표라고 하겠다. 특히 공무원들이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경우, 이는 곧 정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통제성(controllability) : 지표로 나타나는 측정대상이나 상황이 현실적으로 통제가능한 성격, 즉 인위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이야 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선에 있는 것인 만큼 통제불가능한 성격의 대상이나 상황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성(accuracy) : 지표는 측정대상 업무활동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모호성을 배제하고 의미전달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비중복성(non-redundancy) : 동일 업무에 대한 유사한 측정지표들은 가능한 하나의 지표로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와 데이터 산출을 위한 관리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 가급적 계속적용이 가능한 지표로서 동일기관 성과에 대한 연도별 비교, 또는 민간부문의 유사기관과의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성과조작의 방지력(resistance to perverse behavior) : 평가지표는 성과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성과를 쉽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성과조작이 쉬울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평가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제시된 평가지표가 갖추어야 할 기준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중복성과 성과조작의 방지력, 그리고 정확성을 제외한 7가지 기준에 대하여 지표별로 판단함으로써 현재의 평가지표를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7가지 기준은 좀더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지표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측정가능성	▶ 문서화 가능성	비교 가능성	▶ 비교가능성
자료수집의 용이성	▶ 자료취득 용이성	통제성	▶ 평가결과의 활용성
신뢰성	▶ 객관성확보	포괄성, 타당성	▶ 평가목적과의 부합성

문서화 가능성, 자료취득 용이성, 객관성확보 그리고 비교가능성은 담당실무자 설문과접촉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평가자료와 증빙자료에 대해 상·중상·중·중하·하의 총 5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지표에 대한 검토를 계량화하기 위해서 5점을 만점으로 하였고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여 지표의 총점으로 하였다.

평가결과의 활용성과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평가결과의 통제성여부와 평가결과와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와의 부합여부에 대하여 상·중상·중·중하·하의 총 5단계로 나누었으며 5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지표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의 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5.1.1 1차자체평가 지표별 평가자료의 접근성 및 신뢰성

(1) 사업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사업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정도에 대한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그리고 비교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표 5.1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한 단위사업수	상	상	상	중
총단위사업수	상	상	상	
첨부 증빙자료				
회의개최내역	상	상	상	중
회의내용	중상	중상	상	

사업계획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정도의 자료취득 용이성은 4.75점이었고 문서화 가능성도 4.75점이었다. 객관성 확보 면에서는 5점, 비교 가능성은 3점이었다.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한 단위사업수로 의견수렴정도를 비교평가하기에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교 가능성이 미약할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성의 수정으로 인해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한 단위사업수로 평가하는 본 지표의 활용도는 낮아질 것 판단되어 중하(2)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마을회의를 개최한 단위사업수가 차기연도에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하(2)점으로 배점하였다.

(2)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정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는 각 읍·면 단위로 추진위원회구성여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지표에 대한 자료의 문서화 가능성, 자료취득 용이성 및 객관성 확보 면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비교 가능성 면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관리청의 직접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주민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 단위수 만으로는 관리청간의 비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주민지원사업의 민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 아니므로 하(1)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이 위원회의 구성을 필수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차기연도에 주민지원사업의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하(1)점으로 배정하였다.

표 5.2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읍·면수	상	상	상	하
총 읍·면수	상	상	상	
첨부 증빙자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일시	상	상	상	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명단	상	상	상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운영실적	상	상	상	

(3)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중·장기사업계획의 수립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수 만으로는 그 비교성이 미약하여 올바른 평가를 수행하기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사업계획을 평가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 중·장기사업계획으로 시행되는 사업액
- 중·장기사업계획의 사업기간에 따른 차등평가

사업수와 사업액, 그리고 사업기간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업기간을 차등 평가할 경우에 기간별 점수 차를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항목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표 5.3 중·장기사업계획의 수립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중 · 장기사업계획의 수립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중 ·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 수	중상	상	중상	중
총 단위사업수	상	상	상	
첨부 증빙자료				
총투자액	중상	상	상	중
연차별투자계획	중상	상	상	
계획기간	상	상	상	

실제로 중·장기사업계획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증빙자료에도 총 투자액과 연차별투자계획, 그리고 계획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지적한 투자액과 기간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료취득 용이성은 4.4점이었고 문서화 가능성은 4.75점, 객관성 확보도 4.75점이었으며 비교 가능성은 3점이었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주민지원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지표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5)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매년의 중·장기계획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5)점으로 배점하였다.

(4)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는 사업내용 일치 단위 사업수와 추진완료 단위사업수로 그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내용 일치 단위사업수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행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계획서상의 사업과 동일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자와 사업내용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작성자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객관성의 확보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완료된 사업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해 변경된 사업인지 당초의 사업계획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

표 5.4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사업내용 일치 단위사업수	중	상	중	중
추진완료 단위사업수	중상	상	상	중상
총 단위사업수	상	상	상	
첨부 증빙자료				
당초계획대비 추진실적	중하	중	중하	중
단위사업 실적서	중상	상	상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중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는 자료취득의 용이성과 비교 가능성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단위사업수의 판단이 모호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뿐 만 아니라 그 첨부 증빙자료인 당초계획대비 추진실적의 자료취득이 어렵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교 가능성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자료취득 용이성은 3.4점이었고 문서화 가능성은 4.6점, 객관성 확보는 4점, 비교 가능성은 3.3점이었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사업의 집행정도와 완료정도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상(4)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이 원활한가를 파악할 수 있고 전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정도와 당해연도의 추진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상(4)점을 배점하였다.

(5)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에 대한 평가는 직접 집행한 단위사업수와 시설설치 또는 구매를 수반하는 사업수를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지표는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청의 직접집행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설설치 또는 구매를 수반하는 사업 중 직접집행한 비율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는 농가에서 직접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여부와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집행토록 하되 착수금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관리청 또는 읍·면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본 지표의 비교 가능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5.5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주민지원사업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직접 집행한 단위사업수	상	상	상	중
시설설치 또는 구매를 수반하는 사업수	상	상	상	
첨부 증빙자료				
직접집행 또는 구입한 증빙자료	중	중	상	중
단위사업 실적서	중상	상	상	

자료취득 용이성은 4.25점이었고 문서화 가능성은 4.5점, 객관성 확보도 5점이었으며 비교 가능성은 3점이었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관리청의 직접집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이 높게 평가되어 중상(4)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관리청의 역할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상(4)점을 배점하였다.

(6)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의 평가내용은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관리카드의 비치 여부이며 총 단위사업수 중 관리책임자와 관리카드가 비치된 사업수의 비율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는 매우 만족스럽지만, 관리자와 관리카드의 유무가 관리의 적정성을 대표할 수만은 없을 것을 판단되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본 지표는 계량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비교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관리책임자지정 등의 관리단위사업수	상	상	상	중
총 단위사업수	상	상	상	
첨부 중빙자료				
사업별 관리카드 비치내역	상	상	상	중
관리카드 비치일자 및 관리책임자명	상	상	상	

본 지표의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는 5점이었으며 비교 가능성은 3점이었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 측면에서 중상(4)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관리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의지와 관리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차기년도에는 보다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상(4)점을 배점하였다.

(7)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사업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단위사업수 중 방문한 사업수의 비율로 판단하고 있다. 총 사업수 중 현장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방문횟수를 2회 이상으로 정하여 그 미만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표 5.7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현장방문 사업수	상	상	상	중상
총 단위사업수	상	상	상	
첨부 중빙자료				
현장방문실적(출장일시·장소·수 해내용)	상	상	상	중상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지표는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현장방문의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다는

담당실무자들의 의견으로 인해 비교 가능성은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는 5점이었으며 비교 가능성은 4점이었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5)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지도·점검 정도를 매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관리청의 역할과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에 필요한 인력구조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5)점을 배점하였다.

(8)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는 해당사업이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업의 평가보다는 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완료된 사업 중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 사업의 비율이며 완료된 사업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한 자이므로 객관성 확보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래 용도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요하는 것이므로 대개는 단위사업실적서를 보고 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5.8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본래용도로 사용되는 사업목적물 수	중하	상	중하	중하
가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업목적물 수	중	상	중상	
첨부 증빙자료				
사업계획목적물 대비 사업완료 후 사용현황	중하	중상	중하	중하

본 지표의 자료취득 용이성은 2.3점이었고 문서화 가능성은 4.7점, 객관성 확보는 2.7점이었으며 비교 가능성은 2점이었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주민지원사업의 전용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이미 지도·점검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지표가 있어 중(3)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주민지원사업의 전용사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상(4)점을 배점하였다.

(9)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만족정도는 해당지역의 주민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을 통해 얻어진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 의하면 설문대상자의 선정방법이 무작위가 아닌 마을이장 등을 포함한 2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의 주체가 사업집행자인 것도 객관성을 결여시키는 원인이 된다.

표 5.9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만족정도 항목에 대한 평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				
구 분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
설문을 통한 평가점수	중	상	중	중
첨부 증빙자료				
설문지	중	상	중	중

본 지표의 자료취득 용이성은 3점이었고 문서화 가능성은 5점, 객관성 확보는 3점이었으며 비교 가능성도 3점이었다.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은 주민의 만족도는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에 철저히 부합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전략과는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중상(4)점을,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주민의 계도와 홍보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5)점을 배점하였다.

5.1.2 평가지표의 총괄적 검토

기 개발된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5.1.1절에서 제시한 지표의 자료취득 용이성, 문서화 가능성, 객관성 확보, 비교 가능성과 평가목적과의 부합성, 평가결과의 활용성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본 지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얻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향후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될 방향과는 다소간 상반된 부분이 있다. 2000년도에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은 시행초기단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중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검토에서 도출된 바에 의하면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계획은 다소 미진하고 단기사업에 일부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리청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지표는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성과 다소간 상반된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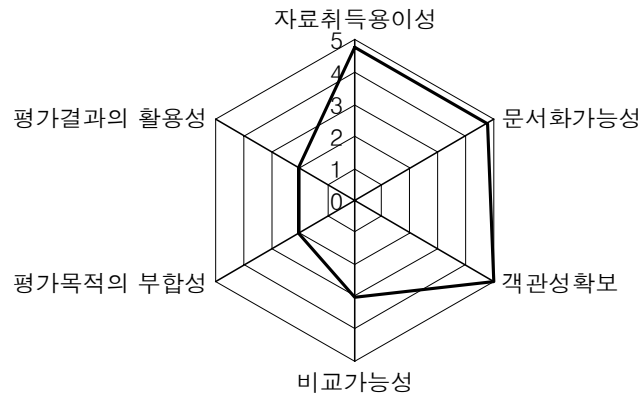


그림 5.1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항목의 종합적 평가

그림 5.1에서와 같이 본 지표는 비교 가능성과 활용성 및 부합성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지표는 차기 평가시에 활용성과 부합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지표의 평가내용인 마을 주민회의 개최를 공청회나 사업계획수립 설명회 등 대민홍보나 계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의 평가목적 또는 사업목적의 부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관리청의 직접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주민이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통제성이 결여된 본 지표의 부합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사업추진의 민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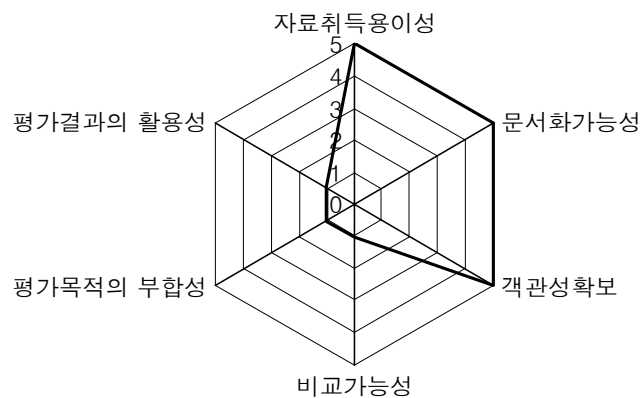


그림 5.2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3)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중·장기사업계획의 수립정도는 평가의 목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의 유도와 잘 부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를 토대로 주민지원사업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본 지표를 평가하는 기준인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수 만으로는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미약한 점이 다소 있다. 본 지표의 평가내용에 중·장기사업계획으로 시행되는 사업액과 중·장기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사업기간에 대한 평가 시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차년도 계획수립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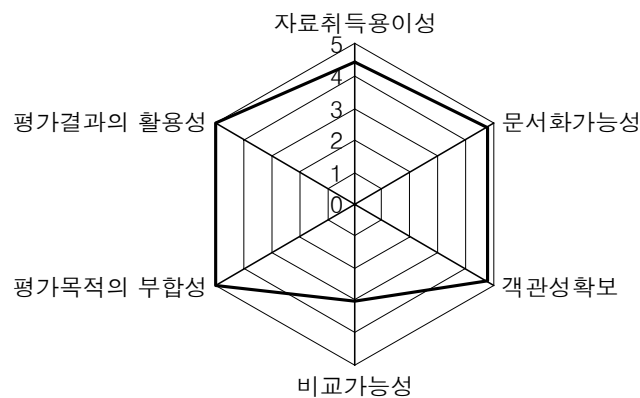


그림 5.3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본 지표의 총괄적인 평가는 그림 5.3과 같이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비교 가능성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평가내용에 중·장기계획사업의 투자액과 사업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일정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다음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성을 판단하고 또한 사업이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추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의 집행자와 사업내용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작성자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객관성의 확보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정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평가목적과 잘 부합되고 있다.

평가결과의 활용도 면에서 사업의 추진정도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이 원활한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년도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정도와 당해년도의 추진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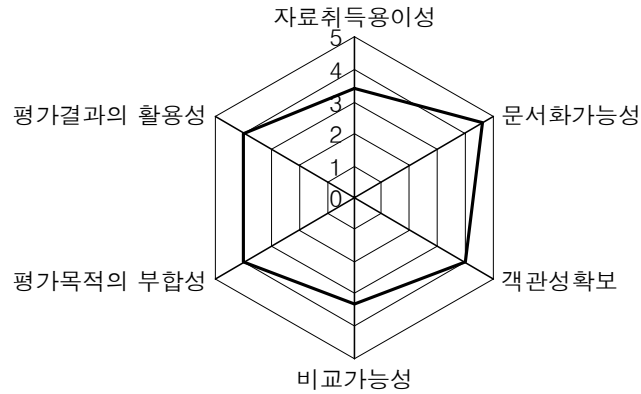


그림 5.4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본 지표가 그림 5.4와 같이 각 항목별로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되기는 했지만 평가내용인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는 연관성이 없는 지표이므로 평가지표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는 자료취득의 용이성과 비교 가능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으며 평가목적과는 부합하지만 평가결과의 활용성 면에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지표는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의 일치정도는 단위사업실적서를 근거로 객관적인 판단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자가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5)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에 대한 평가는 관리청의 직접집행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는 농가에서 직접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여부와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집행토록 하되 착수금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관리청 또는 읍·면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별도 조항을 두고 있어 평가목적과의 부합성을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주체가 관리청이고 관리청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표이다. 다만 정량적인 평가와 아울러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지표의 평가결과의 활용성은 주민지원사업의 주체인 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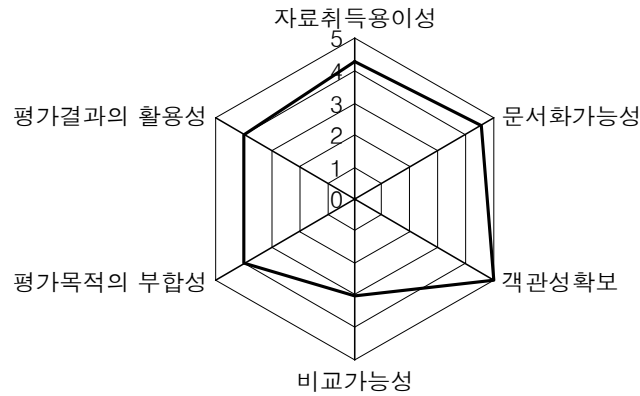


그림 5.5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6)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 추진사업의 관리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측면은 사업의 추진내용과 아울러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평가항목이며 평가목적과의 부합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각 단위사업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가결과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단위사업별 관리정도를 파악하여 차기년도의 사업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지표는 계량성은 뛰어나지만 실질적인 이행내역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비교 가능성이 다소 낮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비계량적인, 즉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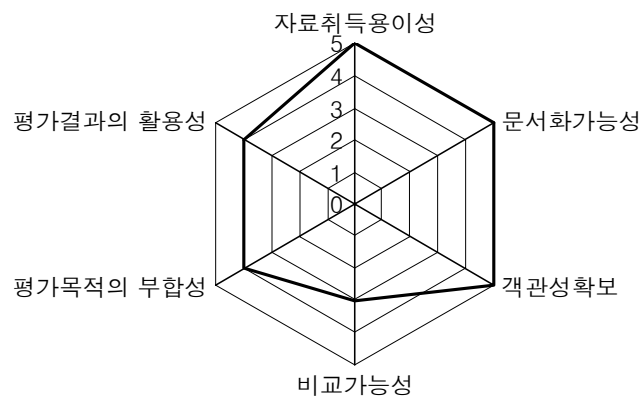


그림 5.6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7)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는 추진되는 사업의 점검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지표이다. 현장방문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다는 담당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장방문 실적은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성여부정도와 주민지원사업관리카드 등 3중으로 점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지표의 평가결과 활용도는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점검 및 관리가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중요한 부분임을 점차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단위사업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도·점검 및 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성적 평가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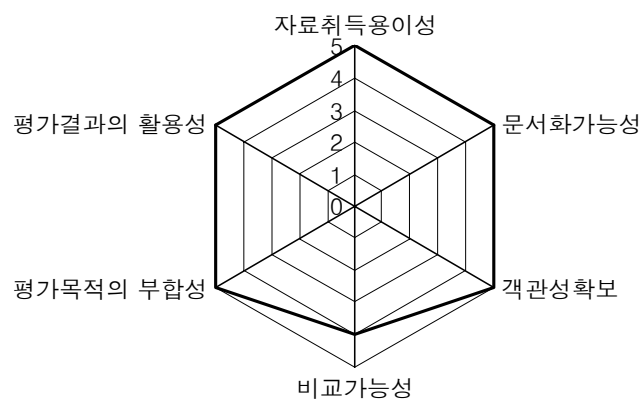


그림 5.7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8)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

본 지표는 해당사업이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요하는 것이므로 전체 사업에 대해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지표의 평가결과 활용성 면에서는 타용도로 이용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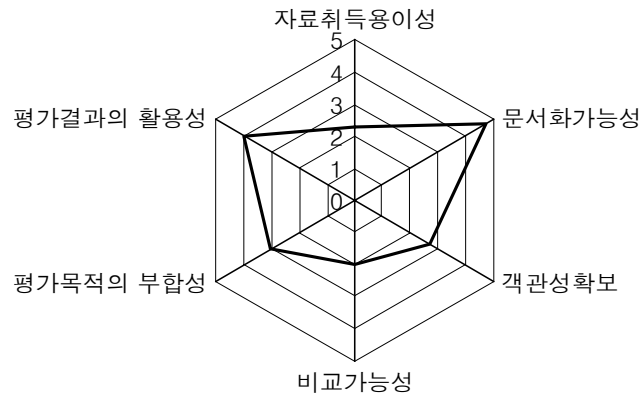


그림 5.8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따라서 본 지표의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본래 용도로의 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2차 평가에서 단위사업실적서를 토대로 타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 실사를 통한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

본 지표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만족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 만족도는 차기년도 사업의 추진전략에 일정부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설문대상자 선정방법은 무작위가 아닌 마을이장 등을 포함한 2명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설문의 주체가 사업집행자인 것도 객관성을 결여시키는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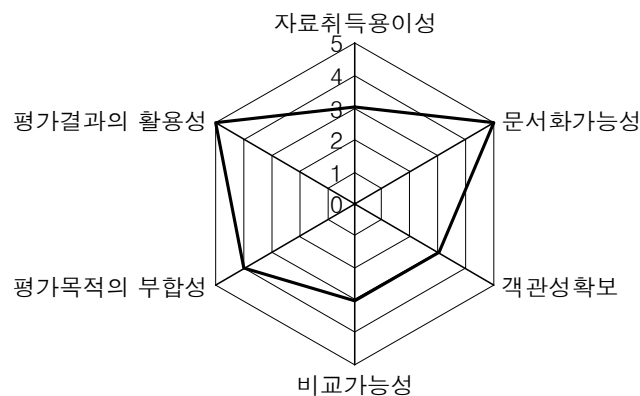


그림 5.9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 항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

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차기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고 또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 항상 효율적인 사업일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의 결과는 주민의 계도와 홍보전략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주민지원사업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5.2.1 지표별 개선점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 평가결과가 보다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선업무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분리하였고, 관리청에서는 정량적 평가를 주로 하고, 정성적인 평가는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설문은 신뢰성확보를 위해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 평가지표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지원사업의 평가가 사후관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정도

주민의견 수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행의 평가기준은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한 단위사업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주민지원사업이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을단위의 사업은 현행의 주민회의 개최내역을 통해 평가하고 대규모의 광역적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청 또는 읍·면이 주관하는 사업계획수립 설명회의 개최내역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설문을 통해 주민의 의견수렴정도에 대한 정성적 평가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현행 평가지표	▪ 마을주민회의를 개최한 단위 사업수	▪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 참석자 ▪ 회의내용
개선 평가지표	▪ 마을주민회의 개최 내역 ▪ 사업계획수립 설명회 개최내역 ▪ 의견수렴정도에 대한 설문	▪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설명회 내용
평가방법	▪ 마을단위사업의 경우에는 마을주민회의의 개최 여부, 광역적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수립 설명회 개최 여부 ▪ 의견수렴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2)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는 구성·운영된 읍·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관리청과 주민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읍·면단위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아울러 시·군단위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현행 평가지표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 · 운영된 읍·면 수	▪ 구성일시 ▪ 위원명단 ▪ 운영실적
개선 평가지표	▪ 시·군 및 읍·면 단위 추진 위원회 구성·운영실적	▪ 구성일시 ▪ 위원명단 ▪ 운영실적 및 협의내역
평가방법	▪ 시·군 및 읍·면 단위의 주민지원사업추진 위원회에 대해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3)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에 대한 현행의 평가방법인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단위 사업수에 중·장기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비를 항목에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사업계획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청의 추진의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현행 평가지표	▪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단위사업수	▪ 총투자액 ▪ 연차별투자계획 ▪ 계획기간
개선 평가지표	▪ 중·장기계획 단위업수 ▪ 중·장기계획 사업비 ▪ 중·장기 핵심사업	▪ 총투자액 ▪ 연차별투자계획 ▪ 계획기간 ▪ 중·장기 핵심사업의 요지 및 사업계획
평가방법	▪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단위사업수와 사 업비를 모두 평가 ▪ 관리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계획 에 대해 검토하고, 관리청의 의지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4)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

본 지표는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완료 단위사업수는 관리청이 자체평가하도록 하고,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필요시 임의로 사업장을 선정, 현장방문을 병행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현행 평가지표	▪ 사업내용일치 단위사업수 ▪ 추진완료 단위사업수	▪ 사업내용일치 여부 증빙 ▪ 당초계획대비 추진실적
개선 평가지표	▪ 사업내용일치 여부 ▪ 추진완료 단위사업수	▪ 수행된 단위사업 목록 ▪ 계획변경된 단위사업 목록(사업비 증감은 제외) ▪ 추진완료된 단위사업목록
평가방법	▪ 사업내용일치여부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후 평가 ▪ 사업추진완료 정도는 완료된 단위사업수를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5)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 여부

관리의 적정성 여부정도는 현행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카드의 비치여부 등 관리상태는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 방문하여 확인토록 한다.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현행 평가지표	▪ 관리책임자 지정등의 관리단위사업수	▪ 관리카드 비치·기록 및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개선 평가지표	▪ 관리단위사업별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관리카드 활용 여부	▪ 관리카드 비치·기록 및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평가방법	▪ 관리카드 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를 일부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6)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상의 단위 사업별 지도·점검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현행 평가지표	▪ 현장방문 사업장수	▪ 출장일시 및 장소, 출장수행내용
개선 평가지표	동일	▪ 출장일시 및 장소, 출장수행내용
평가방법	▪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사업장 비율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7)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

관리청의 자체평가는 생략하고 평가기관이 관리청에서 제출해온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한다.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현행 평가지표	▪ 본래용도로 사용되는 사업목적물 수	▪ 당초사업계획목적물 대비 사업 완료 후 사용현황
개선 평가지표	동일	▪ 단위사업별 동일용도로의 이용 여부
평가방법	▪ 사업목록을 검토하고 전용의 우려가 있는 목적물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8)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

본 지표에 대해 현행의 평가방법은 관리청이 리·동장을 포함한 2명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설문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리청이 제출하는 마을회 회원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회원, 사업비 배분 기초자료 D/B자료 등에서 임의 추출하여 선정한다.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현행 평가지표	▪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설문	▪ 설문점수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첨부
개선 평가지표	▪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설문	▪ 기 제출한 자료의 목록 등을 활용
평가방법	▪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에서 설문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5.2.2 추가적인 평가지표

(1)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 인력체계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평가지표	- 인력체계 중 전담자 비율 - 전년도 대비 전담자 또는 인원보강 여부	- 전담자와 비전담자를 구분한 공무원 체계 - 전년대비 증원인원
평가방법	- 공무원체계 중 전담자의 비율을 평가 - 전년대비 전담자가 증가되었거나 전년도에 비해 인원이 보강되었는가를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2) 사업계획 및 사업별 예산내역 공개여부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평가지표	사업계획 또는 예산내역 공개 정도	- 내역 공개 근거 공문사본 - 내역 공개자료 사본
평가방법	관리청이 읍·면등에 게시토록 한 내역 공개자료와 근거 공문을 토대로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3)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여부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평가지표	주민지원사업 홍보내역	- 홍보회 개최내역 - 주민지원사업 홍보자료 사본
평가방법	- 주민지원사업의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해 실시한 워크숍, 공청회, 설명회 등의 개최내역을 평가 - 홍보자료와 홍보실적사진 등을 검토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4)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여부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평가지표	▪ 환경친화적 사업 수행여부	▪ 수질 또는 생활환경의 개선이 기대되는 핵심사업의 요지 및 사업계획
평가방법	▪ 관리청이 제출한 수질 또는 생활환경의 개선이 기대되는 핵심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리청의 환경 친화적 사업 수행의지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5) 사업관련지침 또는 업무편람정비여부

구 분	평가기준	평가자료 및 첨부서류
평가지표	▪ 사업관련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의 작성·활용 여부	▪ 사업사업관련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의 사본
평가방법	▪ 관리청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의 활용여부 평가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5.2.3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안)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은 기존의 9개 지표의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보완하고 주민지원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표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주민지원사업 평가시 업무가 가중된다는 일선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청의 업무를 대폭 축소시키고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업무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1차평가항목을 기존의 9개에서 8개로 조정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시켰으며, 총괄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관리청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차평가결과 제출시 총괄평가를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평가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표를 개선하였으며, 표 5.10은 평가지표의 개선(안)이다.

표 5.10 주민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안)

평가 부문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 기법	평가주체	
				관리청	평가기관
사업 계획 수립 부문	민 주 성	•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정도			
		- 주민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사업수	정량	○	○
		- 의견수렴정도 설문	정량		○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정도	정량	○	○
		•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여부	정성		○
		•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여부	정성		○
	계 획 성	•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 중·장기계획 사업수와 사업비	정량	○	○
		- 중·장기 핵심사업	정성		○
		•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여부	정성		○
사업 계획 의 시행 및 관리 부문	추 진 성	• 사업의 완료정도	정량	○	○
		•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정량		○
		•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정량	○	○
		• 사업관련 지침 또는 업무편람정비 정도	정성		○
	관 리 성	•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여부			
		- 관리단위사업별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정량	○	○
		- 관리카드 활용여부	정성		○
		• 단위사업장별 지도·점검정도	정량	○	○
		•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	정성	○	○
사업 성과 부문	성 과 성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	정량		○

부분	사업계획수립(A1100)	지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수렴 정도(A1110)
세부 지표	주민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수(A111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주민회의 개최 사업수+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수)/총사업수×100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주민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수 기재내역 : 주민회의 개최 사업수,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수, 총 사업수 ※ 사업설명회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과 읍·면·동이 실시한 것을 분리하여 기재 [별첨1 참조]		
첨부 자료	주민회의 및 사업설명회 증빙자료 [별첨1-1 참조]		
평가 주안점	시·군이 주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사업수를 위주로 하고, 읍·면·동이 수행한 사업은 주민회의를 개최한 사업수를 위주로 평가		

[별첨 1]

주민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사업수

● 비율산정 :

$$\frac{\text{주민회의 개최사업수} + \text{사업설명회 개최사업수}}{\text{총 사업수}} \times 100 = \text{점}$$

구분	주민회의 개최한 사업수(A)	사업설명회 개최한 사업수(B)	총사업수(C)	(A+B)/C ×100
합계				
시군자체				
읍면동합계				
○○읍면동				

〈주민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내역〉

행정단위	단위사업명	회의개최 내역				비 고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	

부분	사업계획수립(A1100)	지표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수렴정도(A1110)
세부 지표	의견수렴정도 설문(A1112)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1\text{번항} \quad \text{갯수} \times 100) + (2\text{번항} \quad \text{갯수} \times 80) + (3\text{번항} \quad \text{갯수} \times 60) + (4\text{번항} \quad \text{갯수} \times 40) + (5\text{번항} \quad \text{갯수} \times 20)] / \text{총 설문자수}$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설문 방법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만족도 정도에 대한 설문 수행시 의견수렴정도에 대한 설문 병행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 평가기관에서 주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점수를 부여 - 설문대상자는 평가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		

부문	사업계획수립(A1100)	지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A1120)
세부 지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정도(A112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구성된 시·군 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구성된 읍·면 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총 읍·면 수 + 1)×100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기재내역 : 행정단위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명단, 구성일시, 운영내역 ※ 시·군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각 면대표로 구성 읍·면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각 리대표로 구성 [별첨 2] 참조		
첨부 자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운영현황[별첨 2-1 참조]		
평가 주안점	시·군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읍·면 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운영상황을 평가		

[별첨 2]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 비율산정 :

$$\frac{\text{구성된 시·군단위 추진위원회} + \text{구성된 읍·면단위 추진위원회}}{\text{총 읍·면수} + 1} \times 100 = \text{점}$$

행정단위	구성일시	위 원 명 단				비 고
		직책	성명	직업	주소	
시·군 단위						
읍·면 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현황〉

행정단위	회의일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비 고
시·군 단위					
읍·면 단위					

부문	사업계획수립(A1100)	지표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공개(A1130)
세부 지표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공개여부(A113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정성적평가 • 평점부여방법 - 정도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내역의 공개와 관련된 문서사본 • 기타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내역의 공개와 관련된 자료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 해당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개여부를 확인 - 관리청이 공개한 사항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공개여부정도를 종합하여 평가		

부문	사업계획수립(A1100)	지표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A1140)
세부 지표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 여부 (A114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정성적 평가 • 평점부여방법 - 정도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 기재내역 : 개최한 홍보회 횟수, 홍보회와 별도로 자료배부한 횟수, 홍보자료 수 ※ 홍보회는 사업설명회 등과는 구별되며, 사업의 계도와 홍보를 위해 개최한 회의 [별첨 3] 참조		
첨부 자료	홍보내역([별첨 3-1] 참조), 제작 또는 작성한 홍보자료의 사본		
평가 주안점	- 주민지원사업의 홍보 및 계도에 대한 관리청의 노력에 대해 평가 - 홍보정도와 홍보내역을 검토하고 평가기관이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 를 부여		

[별첨 3]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정도

〈홍보 현황〉

구분	개최한 홍보회 횟수	홍보회와 별도로 자료배부한 횟수	홍보 자료수
합계			
시군주관			
읍면동합계			
○○읍면동 주관			
...			

〈홍보 내역〉

행정단위	홍보일시	홍보내용			비고
		홍보장소	홍보대상	홍보방법	

※ 첨부서류 : 홍보자료 사본

부분	사업계획수립(A1100)	지표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정도 (A1150)
세부 지표	중·장기계획의 사업 수와 사업비 (A115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중·장기계획 사업수/총사업수 + 중·장기계획 사업비/ 총사업비)× 50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중·장기사업계획의 수립정도 기재내역 :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수, 총사업수,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비, 총사업비 ※ 2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재 [별첨 4] 참조		
첨부 자료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증빙서류 (별첨 4-1)		
평가 주안점	단기적인 사업(1년)을 제외한 2년 이상 계속 추진사업수의 비율과 사 업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별첨 4]

중·장기사업계획의 수립 정도

• 비율산정 :

$$\left(\frac{\text{중·장기계획 사업수}}{\text{총 사업수}} + \frac{\text{중·장기계획 사업비}}{\text{총 사업비}} \right) \times 50 = \text{점}$$

〈중·장기 사업계획 현황〉

구분	중·장기계획 으로 추진되는 사업수	총 사업수	중·장기계획 으로 추진되는 사업비	총 사업비	비 고
합계					
시군주관					
읍면동합 계					
○읍면동 주관					

〈중·장기사업계획의 수립내역〉

행정단위	단위사업명	총투자액	당해년도사업비	계획기간 (년~ 년)

부분	사업계획수립(A1100)	지표	중·장기사업계획의 수립 (A1150)
세부 지표	중·장기계획 핵심 사업 (A1152)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정성적 평가 • 평점부여방법 - 정도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핵심 중·장기사업설명서 기재내역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투자액, 사업개요, 사업의 내용 ※ 관리청이 중·장기사업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2~3가지 를 선정하여 사업설명서를 제출 [별첨 5] 참조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방문하여 관리청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의지를 평가 - 평가기관이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		

[별첨 5]

핵심 중 · 장기사업 설명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투자액	
사업개요	<u>사업 선정이유 :</u> <u>사업의 효과 :</u>		
사업내용			

부분	사업계획수립(A1100)	지표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 (A1160)
세부 지표	환경친화적 사업의 선정 여부 (A116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정성적 평가 • 평점부여방법 - 정도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환경친화적 사업설명서 기재내역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투자액, 사업개요, 사업의 내용 ※ 관리청이 상수원보호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2~3가지를 선정하여 사업설명서를 제출 [별첨 6] 참조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추진의도를 파악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관리청의 친환경적 사업선정의 의지를 평가 - 평가기관이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		

[별첨 6]

환경친화적 사업설명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투자액	
사업개요	<u>사업 선정이유 :</u> <u>사업의 효과 :</u>		
사업내용			

부분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A1200)	지표	사업의 완료(A1210)
세부 지표	사업의 완료정도 (A121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완료된 사업수/총 사업수 + 완료된 사업비/ 총 사업비)×50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사업완료정도 기재내역 : 총 사업수, 완료된 사업수, 총사업비, 완료된 사업비 [별첨 7] 참조		
첨부 자료	완료되지 않은 사업목록(사업명, 사업비, 완료예정일)([별첨 7-1]참조)		
평가 주안점	주민지원사업이 평가기준일까지 완료된 정도를 파악하고 완료된 사업수와 사업비에 대하여 평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율과 완료예정일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이 통합적으로 평가		

[별첨 7]

사업의 완료 정도

• 비율산정 :

$$\left(\frac{\text{완료된 사업수}}{\text{총 사업수}} + \frac{\text{완료된 사업비}}{\text{총 사업비}} \right) \times 50 = \text{점}$$

〈사업완료 현황〉

구분	총사업수	완료된 사업수	총사업비	완료된 사업비	비고
합계					
시군주관					
읍면동합계					
○○읍면동 주관					
...					

〈미완료 사업목록〉

행정단위	단위사업명	사업비	추진율	사업완료 예정일

부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 (A1200)	지표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A1220)
세부 지표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A122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정성적평가 • 평점부여방법 - 정도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A1271의 제출서식으로 같음.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 제출된 사업목록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임의 선정하여 현장 방문 실시 - 평가기관이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		

부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 (A1200)	지표	공무원 인력체계(A1230)
세부 지표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 인력체계(A123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총인원/(총읍면+1) \times 50) + (전담자 \quad \text{증가수} \times 30) + (비전담자 \quad \text{증가수} \times 10)$ 전담공무원수의 증가 : 30% 비전담공무원수의 증가 : 10%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기재내역 : 전담공무원 및 비전담공무원의 인적사항, 근무부서 등 ※ 당해연도의 공무원인력체계를 작성하고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인력수를 비교하여 증감을 기재 [별첨 8] 참조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관련공무원의 인력체계를 파악하고 전담인력 확보정도와 인력 충원정도를 평가 - 전담인력의 증가에 비중을 두어 평가할 뿐만 아니라 비전담인력의 충원도 함께 고려		

[별첨 8]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무원인력체계

● 비율산정 :

$$\left(\frac{\text{총인원}}{\text{총읍면} + 1} \times 50 \right) + (\text{전담자 증가수} \times 30) + (\text{비전담자 증가수} \times 10) = \quad \text{점}$$

〈공무원 인력 현황〉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
총인원			
전담공무원수			
비전담공무원수			

〈인력 내역〉

행정단위	관련공무원 성명		해당 근무부서	비전담공무원 주 수행업무	비고
	전담공무원 (직급)	비전담공무원 (직급)			

부분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A1200)	지표	사업관련지침 또는 업무편람 정비 (A1240)
세부 지표	사업관련지침 또는 업무편람 정비정도 (A124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정성적 평가 • 평점부여방법 - 정도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첨부 자료	• 사업관련지침 또는 업무편람 등의 사본		
평가 주안점	- 관리청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지침 또는 편람을 제출받아 활용여부 등 평가 - 평가기관이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		

부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A1200)	지표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여부 (A1250)
세부 지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A125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사업장 수/관리대상 사업장 수 × 100 ※현장(시설 또는 기자재)이 없는 단위사업제외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단위사업별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기재내역 : 총사업장 수, 관리대상사업장 수, 관리현황 등 [별첨9] 참조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관리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여부 등 사업장의 관리상태 평가		

[별첨 9]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 비치 여부

• 비율산정 :

$$\frac{\text{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카드비치된 사업장수}}{\text{관리대상 사업장수}} \times 100 = \text{점}$$

관리대상 사업장수 = 총 사업수 - 관리미대상 사업수

<단위사업별 관리 개요>

행정단위	총 사업수	관리대상 사업장 수	관리책임자 지정사업장 수	관리카드 비치 사업장 수	비 고
합 계					
○○군					
○○면					

<단위사업별 관리현황>

행정단위	사업명	관리대상 사업장여부	관리책임자 및 관리카드			비 고
			지정일시	관리 책임자	관리카드 비치여부	
○○군						
○○면 ...						

부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 (A1200)	지표	단위사업별 관리의 적정여부 (A1250)
세부 지표	관리카드의 활용여부 (A1252)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정성적 평가 • 평점부여방법 - 정도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A1251의 제출서식으로 같음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A1251의 제출서식으로부터 일부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관리책임자와 관리카드의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카드의 활용성 등을 평가 평가기관이 5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		

부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A1200)	지표	단위사업별 지도·점검 (A1260)
세부 지표	단위사업별 지도·점검 정도(A126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업수/(총사업수)×100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단위사업 지도·점검 내역 기재내역 :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내용 [별첨 10] 참조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단위사업을 지도·점검한 정도로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성을 평가 평가기관이 일부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지도·점검내역을 확인		

[별첨 10]

단위사업 지도·점검 내역

● 비율산정 :

$$\frac{\text{2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사업수}}{\text{총 사업수}} \times 100 = \text{점}$$

〈지도·점검 내역〉

행정단위	총 사업수	2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사업수	비 고
합 계			
○○군			
○○면			

〈지도·점검 현황〉

행정단위	사업명	지도점검내역			비고
		점검일시 (1회)	점검일시 (2회)	점검내용	
○○군 또는 ○○면 ...					
○○면 ...					

부문	사업계획의 시행 및 관리(A1200)	지표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A1270)
세부 지표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 이용정도(A127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정량적 평가 • 평점부여방법 - 정도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제출 서식	•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기재내역 : 단위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동일용도로의 이용정도 [별첨 11]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 단위사업별 사업계획과 동일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비율에 따라 평가 - 평가기관이 일부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확인		

[별첨 11]

사업계획과 동일한 용도로의 이용정도

• 비율산정 :

$$\frac{\text{동일용도 사용 사업수}}{\text{총 사업수}} \times 100 = \quad \text{점}$$

행정단위	단위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동일용도 이용여부	비 고
합 계					
○○군					
○○면					

부문	사업성과(A1300)	지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A1310)
세부 지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정도(A1311)	배점	
평가 방법	• 산식 항목답변등급(총5등급)의 총점을 평균하여 점수화 1등급 : 20점, 2등급 : 15점, 3등급 : 10점, 4등급 : 5점, 5등급 : 0점 • 평점부여방법 – 비율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설문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 제출한 마을주민회의 구성원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대상자(D/B자료 활용)중 2차 평가기관에서 임의 추출하여 대상자를 선정		
첨부 자료			
평가 주안점	주민지원사업의 설문은 평가기관이 직접 수행		

5.3 평가방법의 보완

5.3.1 평가범위의 구분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서는 1차 자체평가와 2차 총괄평가로 구분하고 1차 자체평가는 각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차 총괄평가는 자체평가서를 취합·정리하여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 문제점

현행 평가방법은 관리청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취합·정리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인계함으로써 총괄평가가 시작된다. 총괄평가에서는 보다 상세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평가의 9개 지표에 대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각 관리청에 요구하게 됨으로써 제출요구자료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자료의 요구에 대해 각 관리청의 주민지원사업관련 담당자들이 이중작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원활하게 추가자료를 획득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또 총괄평가에서 평가해야할 지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정에도 없는 자료를 임의로 요구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리청과 총괄평가기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개선방안

각 관리청과 수계위 또는 외부평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하에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분	대안
①안	1차 평가와 2차 총괄평가의 평가지표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1차 평가는 관리청이 자체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외부기관이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②안	평가지표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관리청으로 제출받아 전문외부기관이 평가를 실시한다.

대안에 대한 검토

①안은 현재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관리청이 제출해야할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1차 자체평가를 존속시키므로 일선 공무원의 불만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차 자체평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일선담당자가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한다. 주민지원사업의 평가가 평가결과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평가지표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어하는데도 일정 부분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선담당자들이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1차 자체평가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정량적인 지표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그 결과가 가장 확실하게 피드백될 수 있다.

1차 자체평가에 대한 일선 담당자들의 의견인 1차 자체평가 항목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가중한 업무가 요구되는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②안은 1차 자체평가를 없애고 총괄평가만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일선공무원의 불만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함으로써 평가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축소된 바가 없고,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반감될 것이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5.3.2 평가단의 구성방안

주민지원사업평가지침에서는 수계위사무국이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토록 의뢰하고 구성된 평가단에서 총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단의 구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안
①안	외부전문기관이 총괄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전문기관의 평가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의 평가전문가와 주민지원사업에 정통한 수계위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②안	외부전문기관이 총괄평가에 필요한 현장방문 등의 현지조사와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후 관련공무원과 평가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결과에 대해 최종평가하도록 한다.

대안에 대한 검토

①안은 수계위가 외부전문기관에 총괄평가를 의뢰함으로써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평가자료의 검토를 통해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장조사와 평가자료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평가단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②안은 총괄평가에 필요한 현장방문 등의 현지조사와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와 주민지원사업의 총괄평가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방문 등의 현지조사는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작업이기 때문에 조사자의 견해가 평가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평가단은 조사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판단해야 하므로 평가의 신뢰도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Ⅶ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주민지원사업의 정의 및 필요성

주민지원사업은 팔당상수원 하류 수도권 2천만 주민을 대상으로 팔당특별대책에 기초한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그중 700억원의 주민지원사업기금을 마련하고 2000년부터 동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한강법 제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다시 한번 주민지원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지원사업은 한강법이 제정된 계기가 된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수립취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대책”은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은 팔당특별대책의 모토인 WIN-WIN(상하류 공영)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질개선의 현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류지역은 환경 친화적 생산활동을 통해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한강유역공동체 의식을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 팔당특별대책 마련의 취지이다.

6.2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1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주민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중 첫번째는 변경승인절차에 관한 것이다. 일선공무원들은 가중된 업무량과 변경승인절차로 인해 사업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법조항과 사업계획수립지침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 6.1 한강법과 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의 변경세부사항

구분	한강법	사업계획수립지침
사업 계획의 변경	시행령 제13조 ④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중 재원계획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재심의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 절차에 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승인 절차 이행 ○ 재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사업구분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에서 세부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재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계위원회의 재심의를 득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 지침에서는 사업구분변경에 있어서도 수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구분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의 변경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을 수행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는 그림 6.1과 같다. 변경승인 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변경내용 대비표, 개별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이다. 현재의 계획변경 요건으로는 사업구분의 변경, 사업구분내 사업의 변경, 동일사업내 내역변경 등이 있다.

(1) 문제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수립시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므로 사업계획 수정, 조달단가 변동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변경승인절차를 요하게 되어 사업의 추진이 지난하다.
- 단일 사업계획의 변경은 또 다른 사업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신중치 못한 계획서로 인해 사업의 변경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은 이미 수 차례 있어왔으며,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주민지원사업이 지연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계획의 수립이 부실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이 짧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업계획의 수립에 주민동의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주민의 사업발의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이 사업의 항목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집행액에 대해서도 관여함으로써 적정한 사업비의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일선공무원의 통제 및 조절역할이 상실되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중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주민의견수렴과정과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여부 검토 철저
-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 선정의 적정성 검토
- 필요시 읍·면 단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이장 외 리별 주민대표 2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대표성 견지

물론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담당공무원의 비능동적인 업무대처에 대한 지적도 없지는 않지만 사업의 선정에 주민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비의 적정분배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도 지난한 실정이다.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의 또 다른 문제는 단일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의 변경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특히 동일사업 내 내역변경 즉, 동일한 사업의 수행 중 발생하는 사업비의 증가에 대해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 사업에서 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해야 하므로 또 다시 타사업의 변경승인을 필요로 한다. 타 사업비의 차감을 위해서는 또다시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주민의 합의를 필요로 하게된다. 만약 주민들간에 각각의 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견을 보인다면 사업의 변경이 추진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일선 담당공무원은 사업비의 증감을 피할 수 있는 수위계약을 선호하게되고 수위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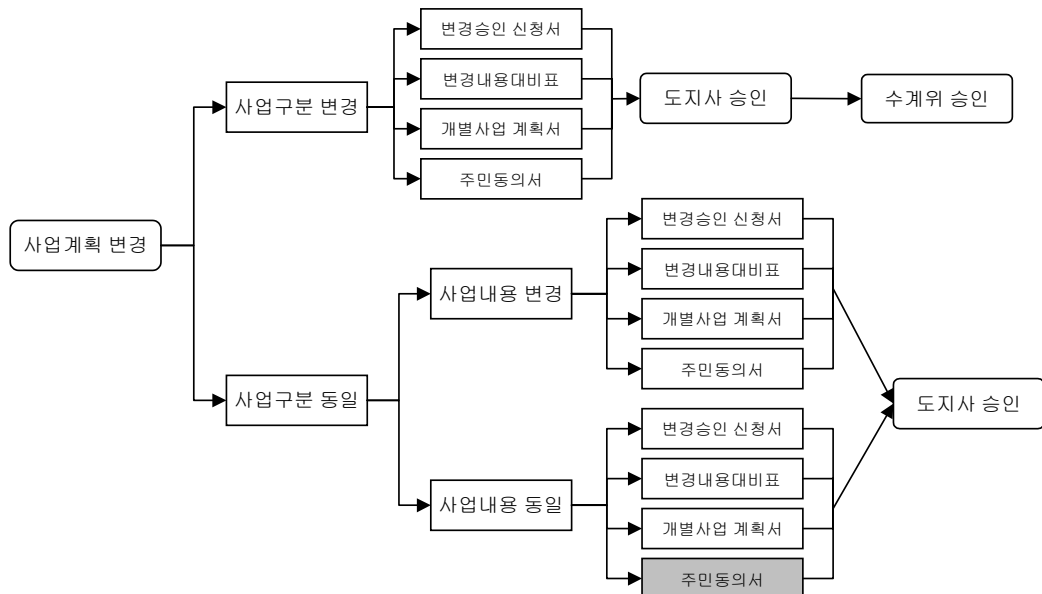


그림 6.1 주민지원사업 계획변경 승인절차

(2) 개선방안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의 간소화 또는 간략화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안
①안	사업계획 변경의 사전승인을 없애고 사후보고 및 사후평가로 대체한다.
②안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을 간략화하고 변경승인절차도 간소화한다.

대안에 대한 검토

①안인 사업계획 변경의 사전승인을 없애고 사후보고 및 사후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은 일선 담당공무원이 가장 요구하는 방안이지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	◦ 주민지원사업의 제도 특성상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 사업의 지난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주민의 사업변경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 일선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단점	◦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기 계획서의 의미가 없어지며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도 불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수계위에서 사업추진정도나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 ◦ 사후보고 및 사후평가만으로는 추진불가한 사업에 대한 제재가 힘들다. ◦ 주민들의 사업변경요구가 증가된다.

①안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지난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도 적지는 않다.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변경할 수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에 신중할 필요가 없으며, 신중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보고와 사후평가만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관리가 어렵고 평가 후 부실 집행에 대한 후속조치보다는 집행 전 사전조치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안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의 간략화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발생을 사전에 조치하는 방안으로 절차의 간소화와 아울러 필요하다. 다만, 사업계획의 관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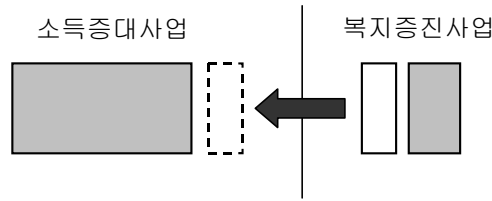


그림 6.2 계획사업의 변경에

사업의 규모변경 시에는 그림 6.2에서와 같이 재원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재원의 변경에 대해 변경승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경절차의 간소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변경승인요건을 지나치게 간략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업계획서의 필요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생략가능 범위 등을 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법, 낙동강법, 영산강법 시행령 제22조(안)에서 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표 6.2 한강법과 금강법, 낙동강법 및 영산강법의 주민지원사업 변경세부사항의 비교

구분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금강법, 낙동강법 영산강법 시행령 제22조(안)
사업계획 의 변경	④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중 재원계획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재심의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사람규모;영산강법) 또는 주민지원사업비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건의 간략화와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변경승인요건에서는 변경사유가 중요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수계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사업계획의 추진이 지연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변경시 사업변경의 경중에 따라서 시·도지사, 수계위사무국, 수계위원회의 승인을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강법 시행령 제13조는 금강법, 낙동강법, 영산강법과 같이 ‘재원계획’을 삭제하고 변경승인 요건을 수립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 변경승인 요구요건에 대해 규정을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변경승인 요구요건

- 계획서상의 사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 시·도지사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비 중 50%이상이 증감된 경우 ▶ 수계위사무국
- 계획서상의 사업이 삭제되는 경우 ▶ 시·도지사
- 계획서상의 사업명이 변경되는 경우(사업시행중 필요에 의해 주사업은 변하지 않으나 보조사업의 추가로 사업명이 변경되는 경우 예)포장공사 → 포장공사 및 옹벽설치) ▶ 시도지사
-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
 -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 ▶ 수계위사무국
 - 위원회 승인사업과 부합되는 사업 ▶ 수계위사무국
 - 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세부사업내용에 포함되는 사업 ▶ 수계위
 - 위원회에서 인정해야 할 사업 ▶ 수계위

또는,

변경승인 요구요건

- 사업구분내 사업계획의 변경 ▶ 시·도지사
- 사업구분외 사업계획의 변경 ▶ 수계위 사무국
- 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
 - 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 ▶ 수계위사무국
 - 위원회 승인사업과 부합되는 사업 ▶ 수계위사무국
 - 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세부사업내용에 포함되는 사업 ▶ 수계위
 - 위원회에서 인정해야 할 사업 ▶ 수계위

6.2.2 직접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민원 중의 하나는 직접 지원사업의 소요처가 없다는 것이다. 소요처가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일부주민들이 현금지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라.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 (공동)구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지원, 유선 방송 유지관리비용 지원, 분뇨수거비 지원, 주민건강진단비 지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가구별 배분, 의료비, 전기료지원,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등은 직접지원에 해당

(1) 문제점

직접지원사업의 소요처가 없다는 민원은 직접지원은 가구별지원이라는 주민의식으로 인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직접지원사업 세부내용」마항에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소요처 부재에 대한 민원은 그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2000년과 2001년 집행된 직접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야보일러 설치와 생활물자지원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물자지원은 생필품과 아울러 냉장고, TV, VTR, 김치냉장고 등이며 현재의 지원방식이 지속된다면 몇 년을 주기로 신형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일부 관리청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기료, 의료비, 분뇨수거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영수증을 정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담당공무원의 막대한 업무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력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다.

직접지원사업은, 일정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가구별 지원형태의 소요처가 있지만 점점 더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원형태의 소요처는 없어질 것이다. 소요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방안은, 끊임없는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발굴한다 해도 농촌지역의 특성상 모든 가구에 필요한 사업일 수 없고 근본적인 민원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2) 개선방안

직접지원사업 집행의 문제에 대해 신규사업의 발굴과 아울러 가구별 현금지원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별 현금지원은 그 적용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신중한 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주민지원사업 중 가구별 현금지원은 기금의 성격은 매우 상이하지만 주민지원사업을 이미

상당기간 수행한 타 법령에서 그 실례를 찾을 수가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서는 1995년부터 매립지 주변영향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왔다. 폐촉법에서 규정한 직접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에 대해 공동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97년과 1999년 개정을 통해 직접영향지역에 대해서는 가구별지원을 하며 간접영향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을 지원하되 필요하다면 가구별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국 전지역에 걸쳐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개정)

시행령 제27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폐촉법에서의 주민지원사업 기금은 한강법이 규정한 기금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며 그 근본 취지도 매우 상이하다. 수혜자부담이란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매립공사가 총이익금의 10%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기금으로 매립지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한강법의 주민지원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폐촉법의 주민지원사업의 수행주체인 매립공사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시 발생했던 민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구별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상수원관리지역별로 직접지원사업을 현금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지원가능한 금액을 관리청별로 산출하여 보았다.

표 6.3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별 현금지원가능액 및 가구당 지원가능액

구분	현금지급가능액(천원)	인구수(명)	가구당지급가능액(천원)
남양주	2,072,530	1,125	1,842
하남시	202,445	42	4,820
광주시	3,493,119	1,636	2,135
양평군	1,327,521	761	1,744

표 6.4 Ⅱ지역(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의 관리청별 현금지원가능액 및 가구별 지원가능액

구분	현금지급가능액(천원)	인구수(명)	가구당지급가능액(천원)
남양주	377,530	374	1,009
용인시	1,337,013	1,654	808
여주군	1,536,495	1,570	978
광주시	461,165	555	830
가평군	1,569,994	382	1,492
양평군	1,776,664	2,071	858

표 6.5 Ⅲ-1지역(특별대책지역외의 수변구역)의 관리청별 현금지원가능액 및 가구당 지급액

구분	현금지급가능액(천원)	인구수(명)	가구당지급가능액(천원)
여주군	295,828	957	309
가평군	136,366	362	376
춘천시	232,432	584	398
원주시	129,336	408	317
충주시	452,980	1,595	284

관리청별 현금지원가능액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I 지역, II 지역 및 III-1의 현금지원가능액은 지역별로 대개 그룹화 되어 있었다. I 지역의 하남시와 II 지역의 가평군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 금액의 차이는 많지 않았다. III 지역의 경우에는 격차가 거의 없다.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직접지원사업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내의 수변구역의 공공구역 또는 국유지에 해당하는 직접지원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직접지원 전액을 현금지원하였을 경우 총 현금지원액 추정치는 약 154억이며 이는 연간 총사업비의 21%에 해당된다.

직접지원사업을 가구별 현금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별 현금지원액의 차이로 인한 지역간의 대립
2. 주민간의 반목 심화
3. 주민들의 토지면적 및 건축물 가치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한 민원

현금지원 방안은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금지원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차적인 변경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관리청과 수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민홍보나 계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2.3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절차에 대해 한강법에서는 관리청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는 주민회의와 주민동의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계획 수립과 선정의 큰 영향력을 가질 우려가 있어왔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사업으로 선정하려는 법적, 제도적 장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주민동의서를 득하게 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수립이 지난하며 대규모사업계획 또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시 각 마을단위별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편, 금강법, 낙동강법 및 영산강법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원활히 하고자 표 6.6에서처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표 6.6 한강법과 금강법, 낙동강법 및 영산강법의 사업계획수립절차 비교

구분	한강법	금강법, 낙동강법, 영산강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계 획 수 립 의 절차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6.6은 한강법과 금강법, 낙동강법 및 영산강법의 계획수립의 절차를 비교한 것이다. 금강법, 낙동강법 및 영산강법의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서는 계획수립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재량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1) 개선방안

현재 사업계획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선정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수립시 관리청과 주민이 상호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안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사업계획수립지침	대안
○ 주민의견수렴과정과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 철저 검토 -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주민의견수렴과정과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여부 철저 검토 - 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시·군 또는 읍·면 단위의 사업계획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6.2.4 특별대책지역Ⅱ 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 확대

현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에 따라 특별대책지역Ⅱ 권역은 주민지원사업의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을 지원하고 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는 한강법에서는 1)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2)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3)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 4)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5)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6)기타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에는 추가적으로 1)축분뇨 발효시설운영비(톱밥)지원, 2)분뇨분리 등 축사개선사업, 3)젖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Ⅱ 권역은 특별대책지역Ⅰ 권역에 비해 행위규제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영역이 수질개선을 확보할 수 있는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또 특별대책지역Ⅱ 권역은 행위규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액의 산정방법(한강법 시행령 별표2)에서 지역별로 차등하여 가중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산정방법에서도 차등하여 가중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가중치는 상수원관리지역별 규제정도에 따라 규제에 대한 점수를 차등화 하여 그 점수의 합산을 통해 결정하였다. 환경부의 상수원관리지역의 권역별 행위규제는 표 6.7과 같다.

표 6.7 상수원관리지역의 권역별 행위규제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내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II 권역 내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I 권역	특별대책지역 II 권역
폐수 배출시설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신규입지불허용	500m ³ 이상 불허용	용량규제없이 BOD 30mg/L이하 허용
폐기물 재생 및 매립 시설	-	-	-	-	불허용(배출수 처리후 허용)	불허용(배출수 처리후 허용)
건축물	거주민 100m ² 이하 농가주택 가능	건축연면적 800m ² 이상 입지불허용	BOD 20mg/L 이하로 처리 가능	-	건축연면적 800m ² 이상 입지불허용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이상 허용)	BOD 20mg/L 이하로 처리 가능
숙박업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신규입지불허용	BOD 10mg/L 이하로 처리 가능	건축연면적 400m ² 이상 입지불허용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이상 허용)	BOD 20mg/L 이하로 처리 가능
식품접객업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BOD 10mg/L 이하로 처리 가능	건축연면적 400m ² 이상 입지불허용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이상 허용)	BOD 20mg/L 이하로 처리 가능
축산폐수 배출 시설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불허용 전량공공처리 또는 퇴비화시 가능	허가대상 시설 불허용 신고대상 허용	허가대상 BOD, SS 50mg/L 이하 허용 신고대상 BOD, SS 150mg/L 이하 허용
골프장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	신규입지 불허용	신규입지 불허용
내수면 어업	거주민어로 행위 허용	신규면허 및 연장 불허용	소규모 어업행위 허용	-	신규면허 및 연장 불허용	소규모 어업행위 허용
유·도선사업	무동력선 가능	신규(증설)면허 신고·신고 및 등록 불허용	-	-	신규(증설)면허 신고·신고 및 등록 불허용	-
집단묘지	-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용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용	-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용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용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 비해 행위규제 정도가 낮기 때문에 II 권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차등하

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지원사업의 제한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문제점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이 오염물질정화사업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수립이 지난하다.
-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 보다 시급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왔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사업계획 발의를 바탕으로 추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바, 오염물질정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발의가 없고 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계획수립에 다소간의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표 6.8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 이행내역

구분	2000년	2001년
오염물질정화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우·오수분류관거설치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우·오수분류관거설치 축산분뇨저장시설설치 마을종합하수처리장 개별오수처리시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비 하수관거설치

현재까지 시행된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은 표 6.8과 같이 대부분이 오수처리시설과 관거의 설치이다. 현재의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은 분명히 오염물질정화사업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해 향후에는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시행이 중복투자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2) 개선방안

이러한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 안
①안	현재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지원사업구분을 전체 일반지원사업으로 확대한다.
②안	현재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지원사업구분을 오염물질정화사업과 상수도시설설치·정비사업 등 일부항목으로 확대한다.
③안	현재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지원사업구분을 전체 일반지원사업으로 확대하되, 오염물질정화사업과 그 외의 일반지원사업비를 50 : 50 또는 타당한 비율로 배분하여 지원한다.

대안에 대한 검토

①안의 행위제한 정도의 차이에 대한 차등지원은 이미 주민지원사업비 산정방법 중 가중치가 이미 차등적용되었기 때문에 지원영역의 제한은 부당하다는 해당지역의 실무 담당공무원과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타상수원관리지역에 비해 적지만 명백히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상수원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안은 원래 법이 정한 차등지원의 범주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상수도시설설치 및 일부항목에 대해 지원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원래 법의 취지와 주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과 2001년의 주민지원사업 모두 일반지원 중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1안과 2안의 경우 오염물질정화사업은 거의 배제되고 추진될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③안은 2안의 문제를 보완하고 법의 취지인 오염물질정화사업을 통한 수질개선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주민의 요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오염물질정화사업과 그 외의 일반지원사업비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변경하여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현안에 대해서 수계위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경우 포괄적으로 일반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I 권역과 동일하게 되어 규제정도에 따른 차별화가 되지 않으므로 재원배분액의 50%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일반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 중에 있다.

6.2.5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일반지원사업 중 기타 시설물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현재의 한강법 시행령에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장비의 구입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마을회관, 노인회관, 가로등, 통학버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는 운영비의 지원을 직접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주민의 민원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지원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직접지원으로 규정한 지침내용은 표 6.9와 같다.

표 6.9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

구분	세 부 사 업 내 용
직 접 지 원 사 업	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라.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 (공동)구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지원 , 유선방송 유지관리비용 지원, 분뇨수거비 지원, 주민건강진단비 지원, 마을회관운영비 지원 ,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가구별 배분, 의료비, 전기료지원,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사업등은 직접지원사업에 해당

표 6.9에서와 같이 현재의 사업계획수립지침에서 운영비 지원을 직접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지원이 가능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직접지원항목으로 공동시설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일반지원만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현재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강, 영산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입법예고안)에서는 한강법을 표 6.10 에서와 같이 변경하였다.

표 6.10 한강법과 금강, 영산강, 낙동강법(입법예고안)의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에 대한 비교

한강법 시행령 [별표 1]	금강, 영산강, 낙동강법 [시행령 별표 3]
1. 일반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물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 (2)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 나.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3)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	1. 일반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물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2)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나.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 시설, 중수도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3)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한강법에서는 일반지원의 사업을 설치와 구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금강, 영산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법예고안)에서는 설치 및 구입·운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비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 문제점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므로써 주민들의 상수원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는데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만을 일정부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치시설의 운영비를 일반지원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 지속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 인해 운영비지원비율이 증가
- 운영비산정의 어려움
- 설치된 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 기간

주민지원사업 중 복지증진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집행되고 있는데,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중 43.3%가 복지증진사업으로 확정되었다. 또 복지증진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실적은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등이다. 이상의 사업들은 대부분 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한 사업으로 만약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급한다면 상당부분이 운영비로 사용될 것이며 소요재원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또 운영비는 사용근거가 미약하고 확인절차가 어려우며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운영비의 지급기간이 대개 장기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운영비의 산정과 시설물의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다.

비록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금강, 영산강,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입법예고안)에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였고 이로 인해 법간의 형평성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에 대한 시설물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선방안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구분	대 안
①안	지원대상시설과 운영비의 정의를 고시하고 전액 지원한다.
②안	지원대상시설과 운영비의 정의를 고시하고 일정부분만 지원한다.

대안에 대한 검토

①안과 ②안의 운영비 지원대상시설과 운영비의 정의를 고시하고 전액 또는 일정부분만 지원하는 방식은 상기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일반지원사업 중 운영비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데 대한 문제점도 지원대상시설과 운영비의 정의를 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②안의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상 선계획 후집행으로 추진됨으로써 운영비의 정확한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운영비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지연했던 어린이집, 어린이공부방, 독서실, 도서관, 탁아시설, 유치원, 놀이방 등 운영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지원대상시설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 지원사업으로 기 설치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대상시설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2.6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시 입찰잔액, 공사비 감소, 구매단가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사업비의 잔액은 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나,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 특성상 반납할 수 없고 이월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이 어려운 이유는 당해연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익년의 사업비로 산정치 못하는데 있다.

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

제16조(기금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마다 관리청별 특별회계의 수입중 기금의 미집행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청은 이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리청에 지출된 기금중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자금은 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의 경비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은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변경승인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잔액이 소액이고 이에 합당한 사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의 수행도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수계위에서는 집행잔액처리방안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으며 사업집행 후 발생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관리청 별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다음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의 지자체가 읍·면별, 재원별, 연도별로 집행잔액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계위의 검토대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2.7 오염물질정화사업 시행의 곤란

주민지원사업의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시행은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해당지역의 오염물질 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해 해당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부 수질정책과의 협의에서 대부분 시행이 반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I 권역의 경우에는 마을하수도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마을하수도가 건설되면 해당지역의 행위제한의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주민지원사업의 성격과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으로서의 자격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II 권역의 경우 마을하수도 하수처리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향후 건설될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중복투자되는 것이므로 하수처리구역에의 마을하수도 건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록 마을하수도의 설치 후 하수처리구역으로 배정되기 위해서는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마을하수도는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요구될 경우에는 오분법이 규정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하수처리구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2.8 지원사업 대상자 인정기준

주민지원사업은 1975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과 1990년에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및 1999년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 분류의 지역은 지정일시가 다르지만 주민지원사업의 적용일시는 1999년 8월 9일로, 한강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시행된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과는 다른 점이 있다. 한강법과 수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의 비교는 표 6.11과 같다.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뿐 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대상자로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강법의 경우에는 상수원관리지역지정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1) 문제점

이러한 한강법의 대상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던 자가 한강법의 인정기준 제한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정부행정에 대한 불만, 불신감이 팽배
- 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목적을 두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강법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이 개개인의 개별적 보상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음
- 또한 토지 및 건축물 등 기타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명시하면서 주민들이 건물의 가치 및 토지면적 대비 차등 지원을 요구할 우려가 있음

1999년 8월 한강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의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자들로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매도하고,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수도법 상에서는 주민지원대상자이었지만 한강법 상에서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임대농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제한됨으로써 마을 주민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마을단위의 유기농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여전히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수질개선사업에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이 추구하는 기본목적과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들이 수질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간의 반목을 쇄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농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시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임대농에 대한 지원논의가 지원대상자인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과 임대농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표 6.11 수도법과 한강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인정기준

구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수도법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 내지 제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 8. 28, 2001. 3. 28>
한강법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 및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
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법	시행령 제 20조 ③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댐건설 ; 낙동강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 4.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구역안에서 어로행위,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2) 개선방안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인정기준의 범위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임대농을 포함하는 것은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의 동참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해당주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된 제도의 운용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안
①안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주민지원대상자로 한다.
②안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관할지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주민지원대상자로 포함한다.
③안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관할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시설을 소유하는 자를 주민지원대상자로 한다.

대안에 대한 검토

①안은 현재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와 수도법에서 지원대상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전부터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수도법에서 지원받던 자가 한강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부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개선안일 것이다. 그러나 수도법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자 모두가 지원대상이었지만 본안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거주하던 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유물없이 거주하는 자는 대부분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거의 수도법의 인정기준을 승계한 것과 다를 없을 것이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법의 지원대상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본안의 주민지원대상 인정기준은 적절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지원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안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전지역의 임대농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대상지역별 수용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③안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고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시설을 소유한 자에 대해 거주기간 없이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본 안의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한자에 대해 행위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이후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도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규제와 불편을 승계하였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 직접지원대상지역에 한하여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인 토지와 인구를 고려하는 산식이 토지만을 고려하는 산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직접지원사업비를 토지비례로 개별 배분하여야 한다.

본 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과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한강법의 기본방향과 상당히 상충되는 안이다. 만약 본 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강법의 사업비 배분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6.2.9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주민지원사업대상자를 규정함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원주민이 한시적으로 관할 지역외로 이주한 후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수도법중의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2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을 위한 예외규정에 대해 원주민에 대한 지속적 거주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생업 등 기타의 사유로 보호구역 밖에서 거주하다가 3년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 원주민으로써 지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신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수도법 중의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또한 폐촉법에서도 폐촉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주변지역의 결정·고시 이후의 전입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과 한강법에 의한 주민지원의 근본취지는 매우 상이하므로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법 제정 이후의 전입자에 대한 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의 전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원주민의 재 전입에 대해서는 구체해주는 것이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당해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일정 기간동안 관리지역밖에 거주하였다가 당해지역으로 재전입한 경우에 지속적인 거주로 간주한다

대안에 대한 검토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전입자에 대해서만 원주민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정도가 타 권역에 비해 크고, 197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타 권역에 비해 오랫동안 규제를 받아왔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이 팔당수계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에 대해 수질개선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1975년 이전부터 거주해왔던 자에 대해서만 원주민으로 간주하고 원주민이 일정기간이내로 상수원관리지역 밖에 거주하다가 당해지역으로 재전입하는 경우에 지속적인 거주로 간주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법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대상 인정기준의 확대와의 법 제정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강법의 지원대상자 인정기준을 낙동강, 금강, 영산강법에서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시킨다면, 재전입 원주민이 대부분 지원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주민에 대한 별도의 구체 방안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2.10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 부재

한강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일반지원사업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시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가 없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주민지원사업이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마을단위 소규모의 일반지원사업의 소요처가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단기적인 사업에 대해 매년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일반지원사업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일반지원사업은 다분히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지원사업은 불특정다수가 공공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마을단위의 소규모사업을 벗어나 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일반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배분보다는 관리청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립된 계획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구분	대 안
①안	관리청이 지역적 안배 하에 일반지원사업의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②안	관리청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일반지원사업의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대안에 대한 검토

①안은 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반지원사업비를 일부만 교부하거나 교부치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장기적인 5개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마을에 필요한 사업과 마을단위가 아닌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규모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일반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립되는 5개년 사업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안은 관리청이 장기적인 5개년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하는 것보다 전문연구기관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계획수립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6.2.11 마을공동시설 소유권이전

주민지원사업을 설치한 마을공동시설은 지자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주민이 마을공동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하에 공동시설에 대한 임의 유용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지원사업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마을공동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위치선정시 주민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지만 공동시설의 소유권 이전 문제로 인해 부지매입 등에서 사업의 추진이 지난한 경우가 있어왔다. 마을회관 등 마을 공동시설의 부지 매입비 중 일부를 마을주민이 기증하는 형식으로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시·군이 아닌 마을공동 명의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비를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시 해당주민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본 이전비 목으로 편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가 있어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해서 수계위에서 본 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

지역주민들이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마을공동시설 중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시설(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에 국한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간자본이전비 목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토록 하고,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에 따라 단체등록을 한 마을회에 한하여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토록 한다.

VII. 결론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을 근거로 수행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선을 위해 평가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존 평가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평가기법 및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의 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은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에 대해서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의 관리측면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대상사업의 선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공개 등 담당공무원들의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또한 주민간의 반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이 다소 지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가 다소 미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은 기존의 9개 지표의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보완하고 주민지원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표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를 대폭 축소시키고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기법을 도입하여 1차 평가항목을 기존의 9개에서 8개로 조정하고 제출서식도 간소화시켰으며, 1차평가결과 제출시 총괄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수행결과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표를 개선하여 3개 부문 5개 분야 17개 지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변경승인절차의 간소화, 직접지원사업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 확대,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오염물질정화사업 시행의 곤란, 지원사업대상자 인정기준,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일반지원사업

의 소요처 부재 개선방안, 마을공동시설 소유권 이전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되어진다. 첫째는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적 이기주의보다는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일선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 또는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팔당수계의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수질개선의 현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류지역은 환경 친화적 생산활동을 통해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한강유역공동체 의식을 가꾸어 나가자는 상하류 공영(WIN - WIN)전략이 주민지원사업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결국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이기에 앞서,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토대로 팔당특별대책의 수립취지인 상하류 공영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개발연구원, 한강수계 관리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비분담 연구, 1997. 2.
- 경기개발연구원, 광역자치단체 평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1998. 12.
- 경기개발연구원, 팔당상류지역의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2001. 6.
- 경기개발연구원,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2000. 12.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
용분담방안 연구, 1999. 4.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환경지표의 개발과 적용, 1999. 12.
- 차의환,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아카데미, 1999.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00 200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2000. 7.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이행계획서, 2000. 7.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0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2000. 7.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 이행계획서, 2001. 9.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안) 개발, 2000. 4.
- 한국행정연구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2000. 10.
- 행정자치부, 200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세부시행계획, 2001. 10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총서, 1999.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1998.
- 환경부,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1998.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ssessing New York City's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2000. 5.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otecting and Restoring America's Watersheds : Status, Trends, and Initiatives in Watershed Management*, 2001. 6.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Protecting Sources of Drinking Water-selected case studies in watershed management*, 1999. 4.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mart Growth at Works : Project Highlights form*

EPA's Ten Regions, 2000. 10.

<http://www.cwconline.org/>

<http://www.epa.gov/OWOW/watershed/>

부록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 개선(안)

주민지원사업 설문

1 2000년도부터 팔당하류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기금으로 팔당상류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요

2 귀하께서 2000년도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3 잘 모른다

3 귀하가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받으신 것이 있다면 지원 받은 것 중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은 무엇입니까?(기재하여주십시오)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1 지역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방향으로

2 주거 및 문화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3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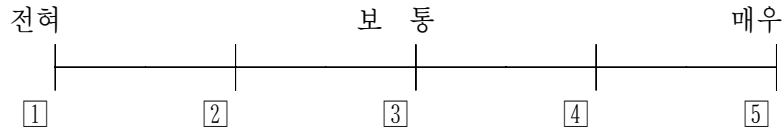
4 주위환경개선과 수질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5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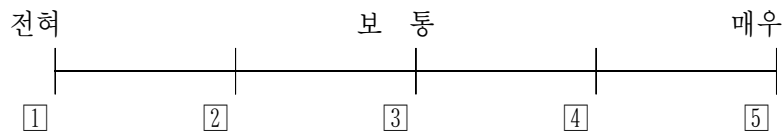
5 귀하의 지역에 2001년도에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통			매우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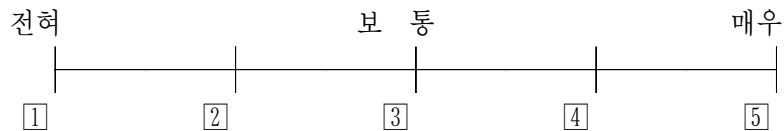
- 6 귀하는 2001년도에 귀하의 거주지역에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이 귀하의 삶에 어떤 형태로라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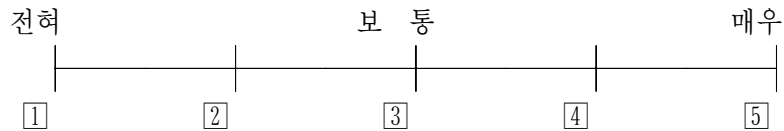
- 7 귀하의 거주지역에서 해당공무원이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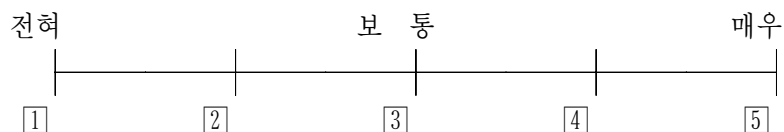
- 8 귀하는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해당관청 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9 귀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10 주민지원사업은 개개인이나 마을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를 고려하여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1 귀하의 생활환경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 12 귀하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민원이 있으시면 기재하여주십시오. (길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구분	해 당 관 서	배부 부수	회수 부수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와부읍, 화도읍, 조안면, 수동면	5	5
광주시	광주시청, 광주읍, 남종면, 중부면, 초월면, 퇴촌면, 오포면, 도척면, 실촌면,	9	9
양평군	양평군청, 양평읍, 강하면, 서종면, 양서면, 강상면, 옥천면, 개군면	9	10
용인시	용인시청, 포곡면, 모현면, 중앙동, 유림동, 동부동, 역삼동, 양지동	8	0
가평군	가평군청,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5	4
여주군	여주군청, 여주읍, 점동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흥천면	12	7
이천시	이천시청, 부발읍, 마장면, 모가면, 백사면, 신둔면, 호법면, 관고동, 중리동, 창전동	11	11
춘천시	춘천시청, 서면, 남산면, 남면	4	4
원주시	원주시청, 부론면	3	0
충주시	충주시청, 양성면, 가금면,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7	8

• 주민지원사업 일선실무자에 대한 설문

일선실무자에 대한 설문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선실무자를 통해서 객관적인 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총 설문건수를 지자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지원사업 설문

주민지원사업내용

- 1 주민에 대한 직·간접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기재하여주십시오.

--	--	--	--	--	--	--	--	--

- ① 소득증대사업
- ② 복지증진사업
- ③ 육영사업
- ④ 오염물질 정화사업
- ⑤ 직접지원

- 2 한강법과 사업계획수립지침에 규정한 소득증대사업 중 가장 주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과 실현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득증대사업 세부내용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① 농기구 수리시설				
② 생산품 공동저장소				
③ 농로				
④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⑤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⑥ 분·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⑦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⑧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⑨ 환경농업 시설·자재				
⑩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⑪ 표고목 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⑫ 농산물건조설의 설치사업				
⑬ 농경지 정비사업				
⑭ 유기농오리				
⑮ 유기질비료구입				

- 3 한강법과 사업계획수립지침에 규정한 소득증대사업 외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사업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본 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법이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영역을 확대하는데 자료로 사용됩니다)

- 4 한강법과 사업계획수립지침에 규정한 복지증진사업 중 가장 주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과 실현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증진사업 세부내용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대체로 불필요	매우 불필요
1 상수도 시설				
2 수세식 화장실				
3 소규모 도로				
4 주민의 건강진단				
5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				
6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 승차대기장				
7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8 체육공원 조성				
9 마을방송시설 설치				
10 주민건강관리시설 설치				
11 마을이정표 설치				
12 보안등 설치				
13 노후화된 복지시설 수선사업				

- 5 한강법과 사업계획수립지침에 규정한 복지증진사업 외에 주민의 편익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사업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본 항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법이 규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영역을 확대하는데 자료로 사용됩니다)

- 6 한강법이 규정한 육영사업은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등 육영관련사업과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의 필요한 육영사업이 있으시다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7 주민지원사업중의 오염물질정화사업이 물이용부담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1 오염물질정화사업을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은 주로 대규모이므로 오염물질정화사업은 소규모의 단위사업을 위해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오염물질정화사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기타수질개선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4 잘모르겠다
- 5 기타 _____

8 대상주민들은 직접지원과 일반지원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8~10번 문항은 직접지원과 일반지원모두 가능한 지역의 담당자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 1 직접지원 2 일반지원

9 귀하께서는 직접지원과 일반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직접지원 2 일반지원

10 대상주민에 대해 직접지원을 할 경우 문제점은 없습니까?

- 1 전혀 문제점이 없다
- 2 지역주민간의 형평성을 맞추기가 힘들다
- 3 일반지원에 비해 민원이 더 발생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
- 4 직접지원을 하고자 하여도 규정된 직접지원항목이 적다
- 5 기타 _____

10-1 직접지원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11 특별대책지역 II 권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일반지원중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문제점이 없다
- 2 일반지원사업의 전항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3 일반지원사업이 여타항목으로 부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12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I, II 권역, 수변구역)내에서 가장 큰 수질오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축산폐수
 - 2 화학비료 및 농약
 - 3接客업소의 오·폐수
 - 4 공장폐수
 - 5 기타 _____
-

사업계획수립

13 현재의 사업계획수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항선택가능)

- ☐ 1 주민지원사업의 뻣뻣한 추진일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시한 맞추기에 급급하다
- ☐ 2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다보니 지역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규모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대부분 소규모사업 또는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된다
- ☐ 3 무조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 ☐ 4 주민들의 의사결정참여로 인해 주민간에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한다
- ☐ 5 현재의 사업계획수립 절차 및 방법에 만족한다
- ☐ 6 기타 _____

14 현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는 재원의 변경이나 중대한 변경사유를 제외하고는 도의 승인으로 사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현행 변경절차에 만족한다
- ☐ 2 변경승인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 ☐ 3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변경시행후 사후보고가 타당하다
- ☐ 4 기타 _____

사업의 추진

15 현재의 귀하의 지역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문제가 없습니까?

- ☐ 1 타지역과 비교하여 불공평하다
- ☐ 2 한강법 시행령에 규정된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되므로 불만은 없다
- ☐ 3 기타 _____

16 현재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액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행위규제를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
- ☐ 2 조금 부족하다
- ☐ 3 충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다
- ☐ 4 충분하지만 지원방법상에 문제가 있다
- ☐ 5 기타 _____

17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업의 최종승인날짜가 너무 늦어 사업자 선정 등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다
- ②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가 너무 촉박하다
- ③ 시간상 문제는 없다
- ④ 기타 _____

18 귀하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다항선택가능)

- ☐ 1 사업추진의 경상비가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의 홍보나 주민의견수렴이 어렵다
☐ 2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추진사업을 관리감독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 3 주민의 민원이 사업추진에서 가장 힘들다
☐ 4 장기적이고 효용성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
☐ 5 기타 _____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참조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한강법 시행령 13조에 의거하여 수계위가 매년 3월말까지 관리청에 통보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 및 평가기준에 준하여 실시하게 된다.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는 시·군의 1차평가와 수계위의 총괄평가로 분류되어있으며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평가기준에 명시한 22개지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지역자문가 자문기구 운영 | •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내역 |
| 가. 자문기구 구성 인력현황 | ※ 첨부서류 : 홍보자료 사본 |
| 나. 자문기구 운영현황 | • 사업의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동의 |
| • 공청회 개최 내역 | • 중·장기·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 • 공무원 인력체계 | • 실무종합 심의회의 개최정도 |
| •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 운영 | 가. 사업집행 과정의 민원발생 내역 |
| 가. 위원회 구성 인력현황 | 나. 민원발생에 따른 실무회의 개최내역 |
| 나. 위원회 운영현황 | •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부지침 및 업무편람 내역 |
| • 전체 공청회 개최 정도 | ※ 내부지침 및 업무편람 사본 : 불임 |
| • 사업계획 및 사업별 예산내역 공개 정도 | •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및 공개여부 |

19 귀하께서는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평가기준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 2 평가기준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수행불가능한 항목도 많다
- 3 평가기준에는 불만이 없지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 4 기타 _____

20 주민지원사업의 평가 후 인센티브적용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지자체에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증액한다
- 2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지자체에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증액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 포상한다
- 3 우수지자체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만 실시한다
- 4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에는 일정부분의 지원금을 증액하고, 평가결과가 나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액한다

21 주민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해 22개 평가지표에 대한 필요자료 중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필요자료	매우 필요	필요	필요하지만 수행은 곤란	불필요
① 자문기구 구성 인력현황				
② 자문기구 운영현황				
③ 공청회 개최 내역				
④ 공무원 인력체계				
⑤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인력현황				
⑥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현황				
⑦ 전체 공청회 개최 내역				
⑧ 주민지원사업관련 홍보내역				
⑨ 사업의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동의서				
⑩ 중·장기·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서				
⑪ 사업집행 과정의 민원발생 내역				
⑫ 민원발생에 따른 실무회의 개최내역				
⑬ 주민지원사업 관련 내부지침 및 업무편람 내역				
⑭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및 공개여부				

22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만족도

23 귀하가 느끼시기에 현재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만족하는 것 같다
- ☐ 2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다
- ☐ 3 대체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
- ☐ 4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

24 주민들의 민원 중에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세가지만 순위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25 귀하가 생각하시는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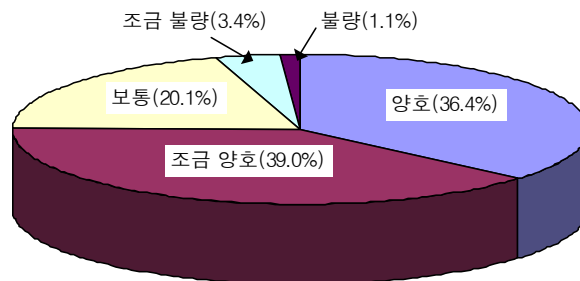
•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은 「2000, 200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를 수행한 결과이며 200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제출되어진 자체평가서에 한해서만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제출된 자체평가서중 양평군에 대해 설문결과를 상세히 제시하고 그 외의 지자체의 설문내용은 결과만 제시하기로 한다.

주민만족도[양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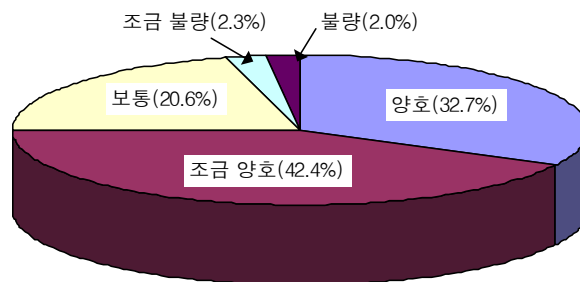
1. 지난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군 또는 읍·면 직원들의 협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호 ② 조금 양호 ③ 보통 ④ 조금 불량 ⑤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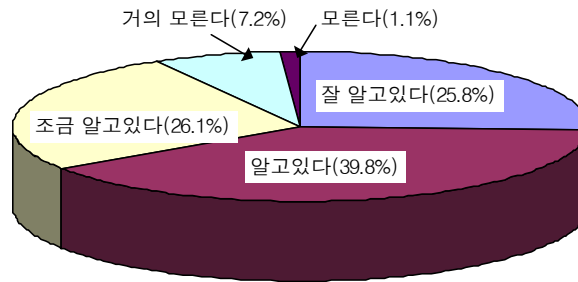
2. 지난해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시 마을주민회의, 공청회 등 모든회의에서 시·군 또는 읍·면 직원들이 열심히 참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호 ② 조금 양호 ③ 보통 ④ 조금 불량 ⑤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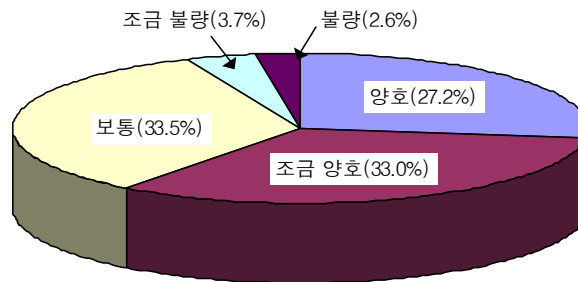
3. 지난해 주민지원사업계획·예산내역 및 집행내역을 잘 알고계십니까?

- ① 잘 알고있다 ② 알고있다 ③ 조금 알고있다 ④ 거의 모른다 ⑤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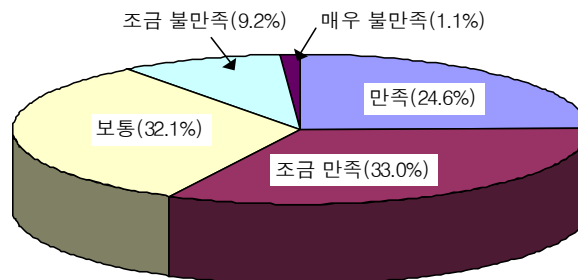
4. 지난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수질개선, 자녀들의 학교생활 등에 기여(또는 도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호 ② 조금 양호 ③ 보통 ④ 조금 불량 ⑤ 불량



5. 지난해 시행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족 ② 조금 만족 ③ 보통 ④ 조금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 점수산정

- 설문지 점수화방법 : 각 문항별 ①번은 20점, ②번 18점, ③번 16점, ④번 14점, ⑤번 12점 부여 (총 5문항 100점)
- 설문지 점수산정 : $\{(\text{①번 개수} \times 20\text{점}) + (\text{②번 개수} \times 18\text{점}) + (\text{③번 개수} \times 16\text{점}) + (\text{④번 개수} \times 14\text{점}) + (\text{⑤번 개수} \times 12\text{점})\} / (\text{총 설문인원})$

- 지자체별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 점수

(2002년 3월 31일까지 제출된 자체평가서에 한해서만 제시하였음)

구분	양평군	춘천시	원주시	충주시
설문점수	88.8점	86점	85.2	83점